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4:00~14:20	20분	인사말 - 보건복지부 -
14:20~14:35	15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통합지원체계) - 보건산업진흥원 -
14:35~15:35	각 15분	[각 기관별 사업 설명회]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
15:35~15:50	15분	휴식
15:50~16:20	30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소개 및 Q&A - 보건산업진흥원 -
16:20~16:50	각 15분	지원사업 우수사례발표 1. 차병원 2. 강남세브란스병원
16:50~17:00		통합설명회 종료 * 유관기관 상담은 별도장소에서 16:30~18시까지 진행

# 목 차

## 발표 1

- 인사말 ..... 1  
보건복지부

## 발표 2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통합지원체계) .....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 발표 3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9  
- 보건산업 인재양성 사업소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보건산업교육본부)

## 발표 4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31  
-의료바이오 수출지원 사업소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발표 5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43  
-산업은행 업무소개-  
한국산업은행 (KDB 컨설팅부)

## 발표 6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59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원제도 개편내용-  
한국수출입은행 (KEXIM 미래산업금융실)

## 발표 7

-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설명 ..... 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의료수출기획팀)

## 발표 8

- 2013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례발표 ..... 165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그룹

## 발표 9

- 2013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례발표 ..... 175  
강남세브란스병원

■ 발표 1 ■

# 인사말

보건복지부

**Note**

## Note

■ 발표 2 ■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통합지원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Note**

##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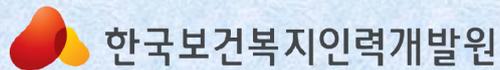
■ 발표 3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보건산업 인재양성 사업소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보건산업교육본부)

# 보건산업 인재양성사업 소개

2014. 7. 16. 윤 나 비



## 목 차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보건산업 인재양성 배경

3 인력개발원 교육방향

4 2014년 교육과정

2

# I.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요연혁

1946. 10 중앙보건소 보건교육과  
1963. 12 국립보건연구원 훈련부  
1981. 11 국립보건원 훈련부

1957. 8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  
1960. 8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  
1977. 3 국립사회복지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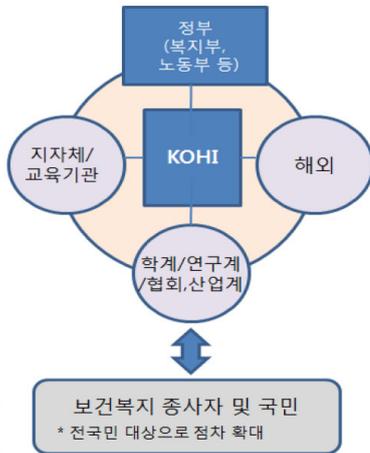
1998. 12.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로 통합  
2004. 11. (재단법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원  
2007.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특수법인 변경  
2010. 11. 서울에서 충북 오송으로 이전  
2013.1.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  
2014.1. 보건산업교육본부 신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요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 대상



주요사업

인재양성사업

- 인재양성 기반조성 사업**  
 국가 보건복지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리딩하는 사업  
 -인재양성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협의회 및 학술대회, 세미나
- 인적자원 개발사업**  
 보건복지 정책을 입안하며, 현장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사업  
 -보건복지 민간인 교육사업  
 -사이버 교육사업  
 -개도국 보건교육사업
- 정책지원 사업**  
 기반조성 및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토대로 국가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사업  
 -사회복무요원교육사업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아동자립지원사업, 보건교육사자격관리 사업, 한방공공보건평가사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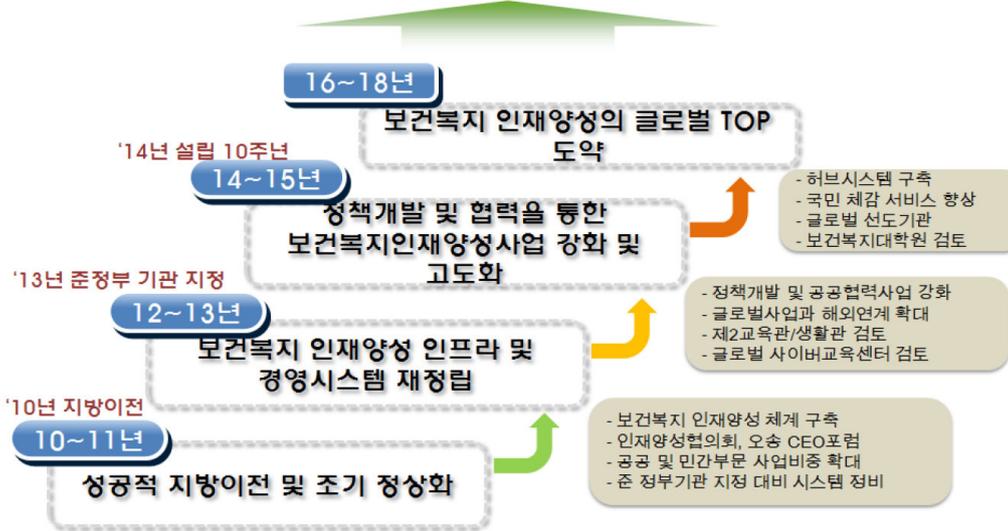


공공부문	2014년 480과정 1,661회 12만명 교육	민간부문
<b>국가 공무원</b>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b>전문인력</b> 보건의료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b>지방 공무원</b> 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보건담당 공무원 (보건소)		<b>보조인력</b>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요원
<b>공공기관 종사자 등</b> 공공기관 종사자 등		<b>보건산업 분야</b> 글로벌헬스케어, 제약, 화장품, 의료기기, 유헬스 등 의료기관, 관련업체, 에이전시 종사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미션비전



- 미션**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비전**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Hub)로서 글로벌 선도기관(Global Top)이 된다



7

# 국가보건의료행정타운 in 오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13층  
02- 3299-1400**



**교육요청 시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서  
맞춤형 방문교육 수행**

## II. 보건산업 인력양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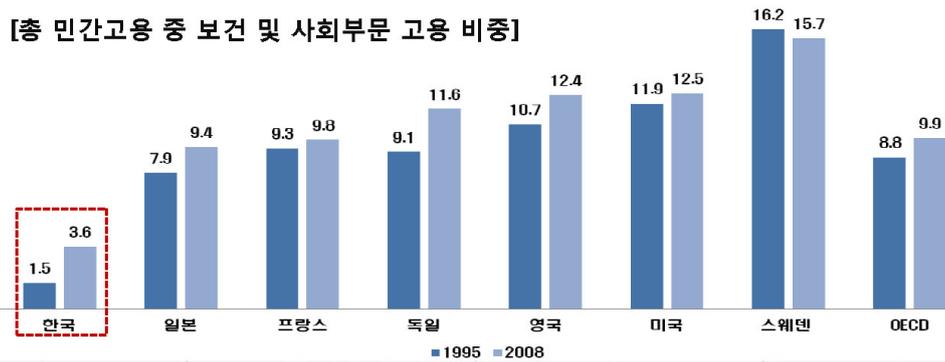
## 보건산업 인력수요의 증가



### \* 고용측면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우리나라 민간고용 중 '보건 및 사회부문 고용'의 비중은 3.6%로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고용측면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총 민간고용 중 보건 및 사회부문 고용 비중]



• 미국과 스웨덴은 2003-2008년 데이터임  
 • 자료: OECD Health data 2008, 5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2011

11

## 보건산업 전문인력의 중요성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대상 조사시 전문인력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어려움	의료분쟁의 위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 부족</li> <li>▪ 의료 서비스 관련 시설 인프라 부족</li> <li>▪ 메디컬 비자 발급대상의 한정</li> <li>- 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 간병인 또는 수행원에게는 발급되지 않음</li> <li>▪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부족</li> <li>▪ 언어소통 문제, 의료분쟁 대응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소통</li> <li>▪ 대화의 부족</li> <li>▪ 컴퓨터 중심 진료</li> <li>▪ 짧은 진료시간, 불친절</li> <li>▪ 환자에게 검사결과, 치료계획,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li> <li>▪ 의무기록 문제, 감염관리 문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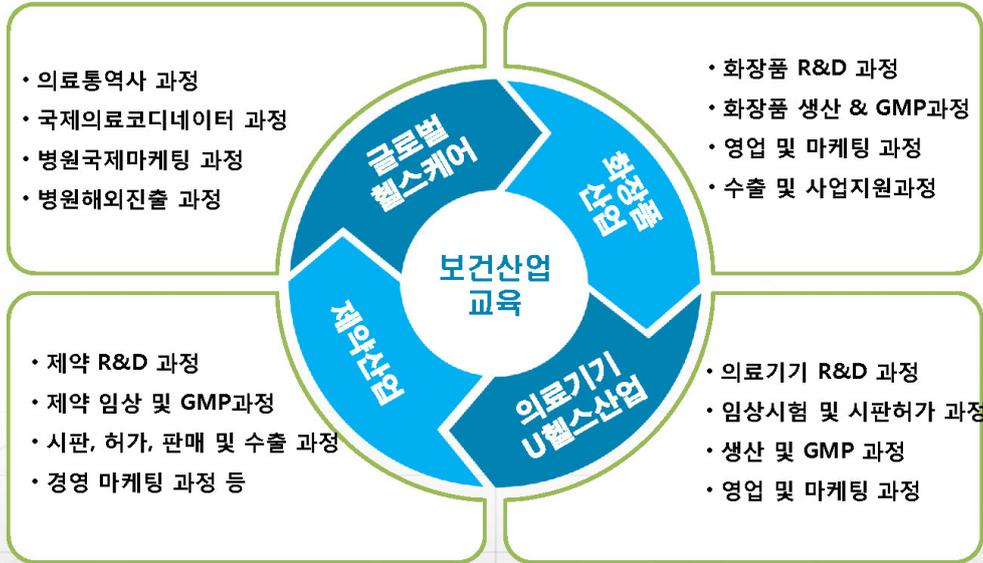
• 출처: 2013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2

## 보건산업 교육과정



### ▶ 보건산업분야 교육영역 및 관련과정



13

## 보건산업 교육기관



### ▶ 보건산업분야 관련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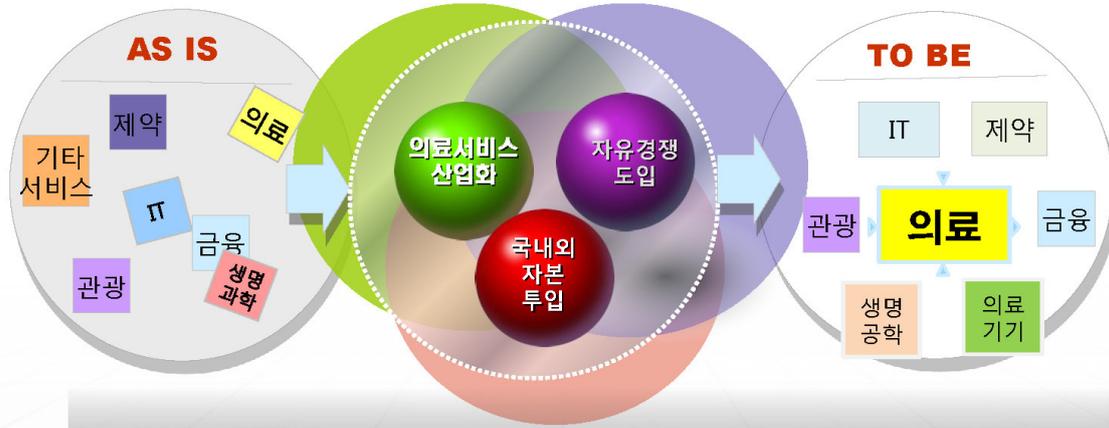
- 사설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총 50개 기관, 66개 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	배출인원
합계	50개 교육기관	66개 교육과정	10,498명

구분	60시간 미만	60시간-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
사설기관 28(21)	15과정(11기관)	9과정(9기관)	10과정(9기관)
대학부설 18(12)	5과정(5기관)	6과정(6기관)	13과정(10기관)
공공기관 6(4)	2과정(2기관)	-	6과정(4기관)
합계	22과정(18기관)	15과정(15기관)	29과정(23기관)
비율	과정 33%	과정 22.7%	과정 44.3%
총 50개 기관 66과정 (대학 학제과정 6개 기관 9과정)			

• 출처: 2014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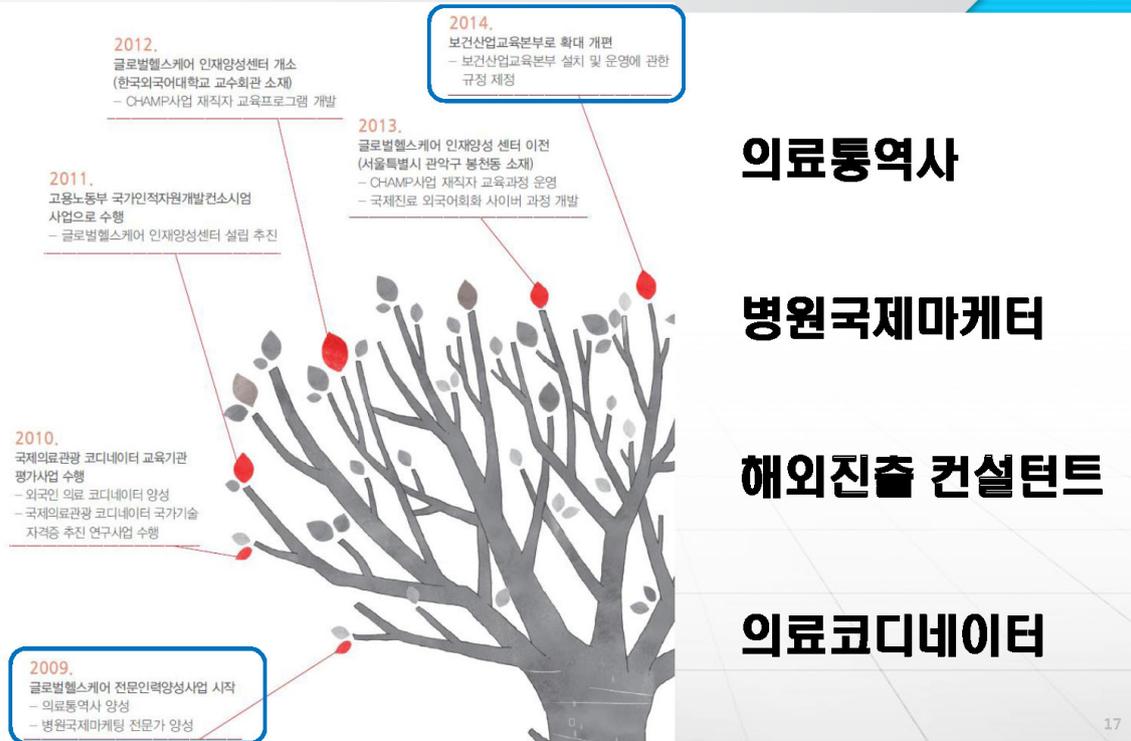
14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보건산업의 총체적 접근 및 핵심인재 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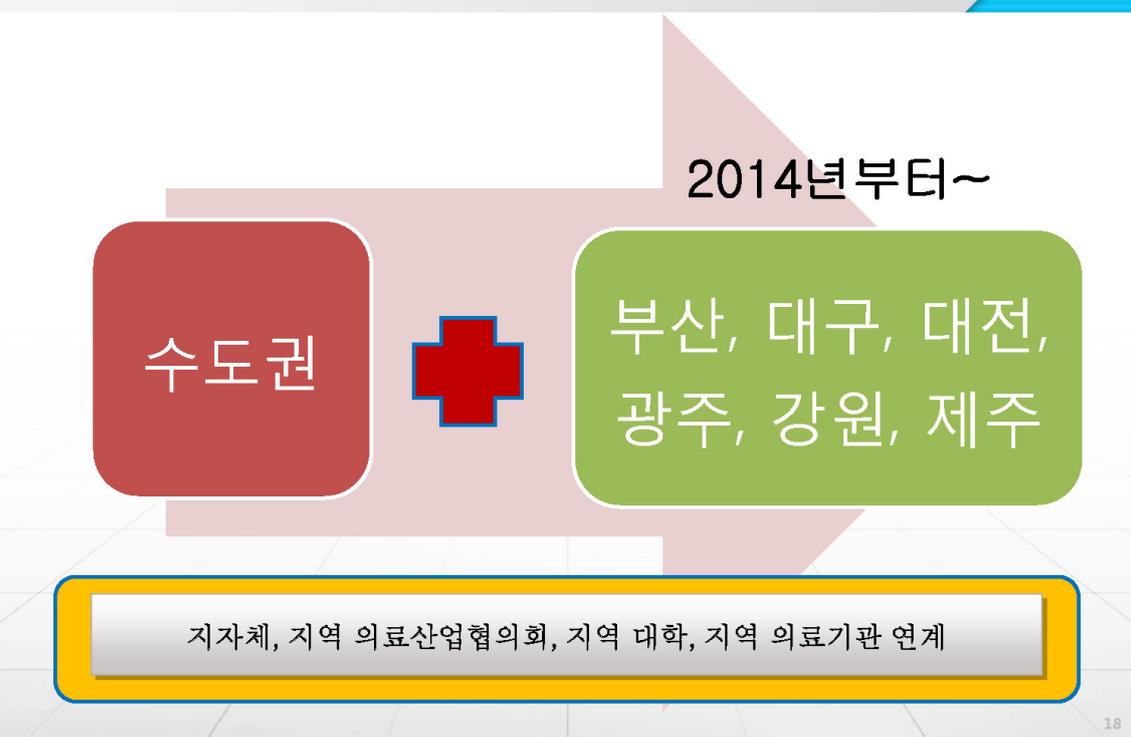
## III. 인력개발원 교육방향

## 2009년부터 글로벌헬스케어 교육시작



17

##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교육확대



18

## 보건의료산업 교육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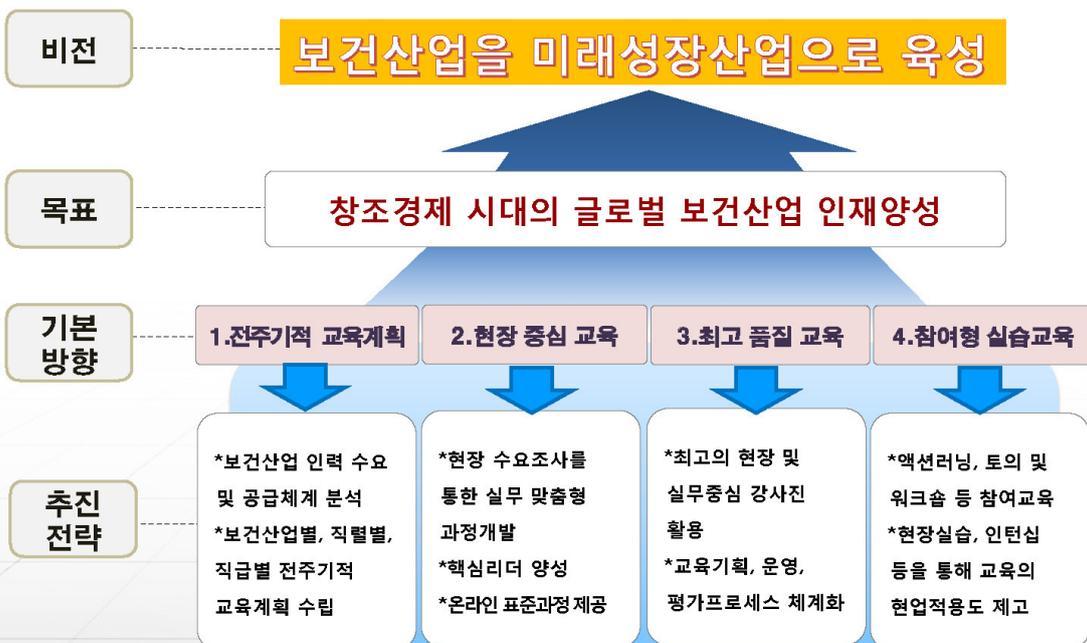
2013년 보건의료산업 교육실적 : 29과정 56회 2,820명

2014년 보건의료산업 교육계획 : 80과정 246회 8,085명

총 계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계획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4	5	189	29	56	2,820	80	246	8,085
교육형태	글로벌	4	5	189	25	42	1,426	26	137	3,355
	제약	-	-	-	2	3	54	27	38	1,331
	화장품	-	-	-	-	-	-	11	21	459
	의료기기	-	-	-	-	-	-	13	20	640
	사이버	-	-	-	2	11	1,340	3	30	2,300
교육재원	복지부	2	2	89	8	9	605	6	19	530
	컨소시엄	2	3	100	21	47	2,215	74	227	7,555

19

## 보건의료산업 교육 기본방향



20

## 중장기 교육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원 기능



21

## IV. 2014년 교육과정



22

## 2014년 보건의료산업 교육체계



분야	구분	기본과정	실무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수행기관
			실무인력	관리인력			
의료 통역	의료통역		• 의료통역 실무과정		• 의료통역사 예비과정 • 의료통역사 전문과정	• 의료통역 강사 양성과정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외국인 의료코디	• 의료통역 입문과정 • 의학용어 온라인과정 • 국제진료건강검진 분야 외국어회화 온라인과정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의료 서비스	환자 리스크 관리	• 국제진료 진료과목분야 외국어회화 온라인과정	• 외국인 환자 리스크관리과정 • 중동 환자 리스크관리과정 • 러시아 환자 리스크관리과정 • 중국 환자 리스크관리과정 • 아시아 환자 리스크관리과정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병원국제 마케팅	• 글로벌헬스케어기 본과정	• 병원국제마케팅 실무과정	• 병원국제마케팅 경영관리자과정	•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과정 • 병원국제마케팅 프로젝트과정	• 글로벌 헬스케어 심화과정	
의료 산업	병원 해외진출	• 병원해외진출 기본과정	•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 중동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 러시아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 중국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 아시아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 병원해외진출 전문과정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 의료관광기본 소양과정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관광분야, 의료분야, 한방분야) • 의료관광마케터과정				

23

## 분야별 주요 교육과정



- **의료통역** : 1)입문, 2)실무, 3)예비, 4)전문, 5)강사양성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
- **의료서비스**: 1)외국인의료코디네이터, 2)외국인환자리스크관리과정  
(중동, 러시아, 중국, 아시아)
- **병원국제마케팅**: 1)기본, 2)실무, 3)관리자, 4)전문, 5)심화과정
- **병원해외진출**: 1)기본, 2)실무, 3)전문과정  
(중동, 러시아, 중국, 아시아)
- **온라인 과정**: 1)의학용어, 2)건강검진, 3)진료과목 외국어 회화

24

## 의료통역분야 교육과정



구분	사이버	의료통역 입문과정	의료통역 실무과정	의료통역 전문인력		의료통역 강사양성과정
				의료통역사 예비과정	의료통역사 전문과정	
단계	기초	기초	실무	중급	고급	특화
대상	관심	의료통역 희망	의료통역 실무	통역 중급수준 소수 언어중심	통역 고급수준 다수 활용언어	의료통역 강이자
언어	전체	전체	전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아랍어 등	전체
목표	기본지식 습득	의료통역에 대한 기본이해 함양	의료통역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	중급 의료통역 인력 배출	고급 의료통역 인력 배출	의료통역과정 강사양성
방법	사이버	단기 집합	중기 집합	중기 집합	장기 집합	단기 집합
내용	의학용어 국제진료 외국어회화	의료통역 개념 및 직무, 관련 전망	의료통역 실기 (100%)	의료이해(30%), 통역실기(70%)	의료이해(50%), 통역실기(50%)	의료분야 통역 표준강의 및 기법
시간	18, 20, 13	16시간	70시간	100시간	200시간	16시간
기간	3~12월	2일	주 8시간씩 2개월	주 6시간씩 4개월	주 8시간씩 6개월	2일
인원	100명	30명씩	25명	25명	65명	15명

## 의료서비스분야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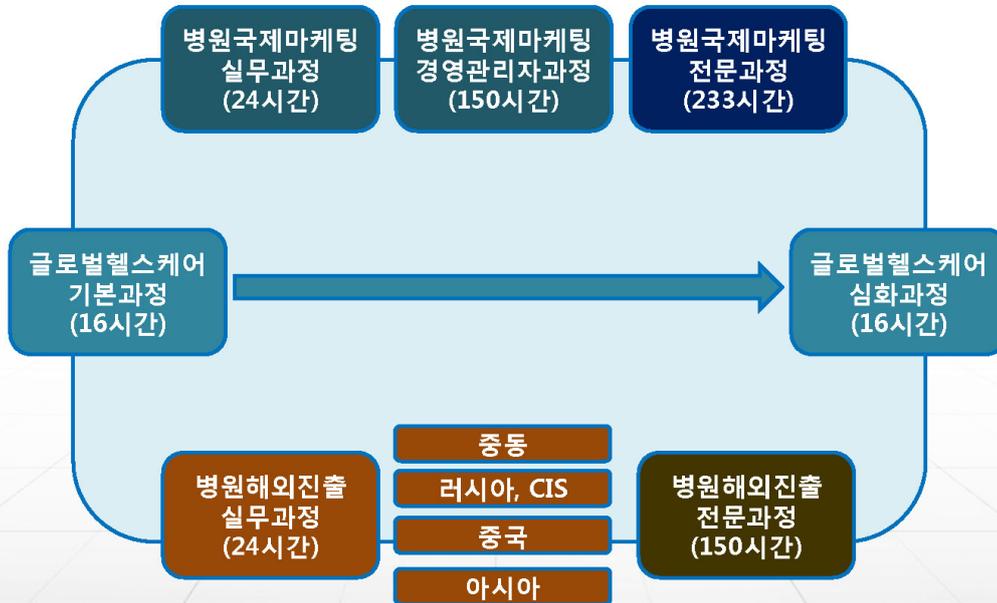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 교육기간 : 총 110시간, 4개월(주 1회, 7시간씩 교육)
- 교육분야 : 의학용어, 현장입상, 국제진료, 병원 의사소통, 코디실무 등

### 외국인 환자 리스크 관리과정

- 교육시간 : 24시간(3일)
- 교육내용 :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단계별 위험요소 및 대처방안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 관련기관 재직자
- 중동, 러시아\* CIS, 중국, 아시아 등 국가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의료산업분야 교육과정



27

## 의료산업분야 교육과정



### 병원국제마케팅 경영관리자 과정(8.9.~11.22.)

- 교육기간 : 총 150시간, 4개월(주 1회, 7시간씩 교육)
- 교육분야 : 의료경영리더십, 메디컬코리아 우수사례, 지역심층이해
- 글로벌의료경영, 관리자간 네트워크, 미래지향&통합적 리더십 향상

###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기간 : 총 233시간, 6개월(주 1회, 8시간씩 교육)
- 교육분야 : 의료서비스 마케팅, 지역 의료시장, 우수 의료기관 견학 등
- 마케팅 프로세스 실습을 통한 마케팅 전략수립 과제 수행

### 병원해외진출전문가 양성과정 2기(8.23.~11.22)

- 교육기간 : 총 150시간, 3개월(주 1회, 8시간씩 교육)
- 교육분야 : 해외진출 기획, 추진, 실행 프로세스, 지역진출 사례 등
- 해외진출 사례분석 및 액션러닝을 통한 팀 및 개인과제 수행

28

##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병원해외진출 기본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 교육개요

- 교육목표: 병원해외진출의 개념, 유형, 현황에 대한 지식습득 및 병원 해외진출 사례와 법적문제 학습을 통한 주요이슈를 파악
- 교육일정 및 지역

과정명	지역	일정	인원
병원해외진출 기본과정	서울	5.27(화)~5.28(수)	각 25명
		7.9(수)~7.10(목)	
		7.17(목)~7.18(금)	
지역 병원해외진출 기본과정	광주	8.21(수)~8.22(목)	각 25명
	강원·제주	8.26(수)~8.27(목)	
	대구	9.23(화)~9.24(수)	
	대전	10.28(화)~10.29(수)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병원해외진출분야에 관심이 있는 재직자 또는 병원 해외진출 분야로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글로벌헬스케어 분야 재직자
- 국가인력개발원소시험 협약기관 재직자에 한함
- 교육비: 무료

### 02 모집안내

- 제출서류: 교육참가신청서 1부(신청양식: [www.kohi.or.kr](http://www.koh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서 이메일 발송([gh@kohi.or.kr](mailto:gh@kohi.or.kr))
- 교육담당: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강소연(02-3299-1430)

### 03 교육내용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병원 해외진출 이해	글로벌헬스케어 산업 이해	- 글로벌헬스케어 현황 - 글로벌헬스케어 정책 및 향후 동향	2
	병원해외진출 프로세스	- 병원해외진출 유형 - 병원해외진출 프로세스 - 병원해외진출 지원현황	3
병원 해외진출 사례	병원해외진출 사례1	- 병원설계, 세팅, 운영, 관련인력 교육 등 해외진출 프로세스 사례	2
	병원해외진출 사례2	- 의료브랜딩,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배이스 해외진출 사례	2
주요 이슈	주요 진출 관심국 의료산업 동향	- 중동, 아시아, 러시아 등 - 의료산업 동향, 시장특성	3
	병원해외진출 시 법적 문제	- 관련 의료법 - 해외투자, 수익환수 등 해외진출 시 법적 문제 - 국제계약 분쟁 해결	3
행정기타	- 등록 및 교육안내 - 입고 및 수료		1

### 교육시간표

교시	1	2	3	4	5	6	7	8	9
시간	09:10	10:10	11:10	12:10	13:10	14:10	15:10	16:10	17:10
입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일자	등록 및 교육안내	글로벌헬스케어 산업 이해	중식	병원해외진출 이해	병원해외진출 사례1				
2일자	주요 진출 관심국 동향	중식	병원해외진출 시 법적 문제	병원해외진출 사례2					

## 중동, 아시아, 중국, 러시아 집중 Target!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 교육개요

- 교육목표: 중동, 러시아, 중국, 아시아 지역 병원해외진출 실무역량 함양
- 교육일정 및 지역

과정명	지역	일정	인원
중동 병원해외 진출 실무과정	서울	8.6(수)~8.8(금)	각 25명
아시아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10.22(수)~10.24(금)	
중국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11.5(수)~11.7(금)	
러시아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11.5(수)~11.7(금)	
지역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광주	6.26(목)~6.28(토)	각 25명
	부산	7.3(목)~7.5(토)	
	대구	7.24(목)~7.26(토)	
	대전	8.7(목)~8.9(토)	
	부산	8.21(목)~8.23(토)	
	서울	9.11(목), 9.18(목), 9.25(목)	
	광주	9.18(목)~9.20(토)	
	대전	9.25(목)~9.27(토)	
대구	10.16(목)~10.18(토)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병원해외진출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 재직자
- 교육비: 무료

### 02 모집안내

- 제출서류: 교육참가신청서 1부(신청양식: [www.kohi.or.kr](http://www.koh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서 이메일 발송([gh@kohi.or.kr](mailto:gh@kohi.or.kr))
- 교육담당: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강소연(02-3299-1430)

### 03 교육내용

#### 1. (중동, 아시아, 중국, 러시아) 각 지역별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병원 해외진출 (12)	병원해외진출 및 프로세스 이해	- 한국의료 해외진출 의미 - 해외진출 주요 구성요소 - 해외진출 프로세스 -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4
	병원해외진출 시 국내법적 문제	- 투자, 수익금 환수 - 조세제도 - 행정법 의료법 제약 등	2
	국제계약 분쟁의 이해와 해법	- 국제계약 개념 및 특성 - 국제계약 구성 및 종류 - 국제계약분쟁 해결방안	2
	영문 국제계약서 작성의 실제	- 국제계약서 작성 일반론 - 관련 계약서 유형별 검토	2
지역 진출실무	병원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상기술	- 협상의 본질 및 협상방법 - 현지 문화와 종교적 특성에 따른 국제협상 기술 사례	2
	해당 지역의 이해	- 지리, 역사, 정치경제 - 의(의)식(食)주(住) 문화 - 종교적 특성, 금기사항	4
	해당 지역 진출 사례 1	- 해당 지역 진출 사례 - 진출 프로세스 - 진출 비즈니스 모델 - 진출 시 유의사항 토의	4
	해당 지역 진출 사례 2	- 해당 지역 진출 사례 - 진출 프로세스 - 진출 비즈니스 모델 - 진출 시 유의사항 토의	4

### 교육시간표

교시	1	2	3	4	5	6	7	8	9
시간	09:10	10:10	11:10	12:10	13:10	14:10	15:10	16:10	17:10
입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일자	병원해외진출 및 프로세스 이해	중식	해당 지역의 이해						
2일자	해당 지역 진출사례 1	중식	해당 지역 진출사례 2						
3일자	병원해외진출 시 국내법적 문제	국제계약 분쟁의 이해와 해법	중식	영문 국제계약서 작성의 실제	병원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상기술				

2. 지역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

구분	교과목	교육시간	비고	
병원해외진출 (8)	병원해외진출 및 프로세스 이해	- 한국의 의료진출 의미 - 해외진출 주요 구성요소 -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4	
	병원해외진출 시 국내법적 문제	- 투자, 수익금 회수 - 조세제도 - 형태별 의료법 제약 등	2	
	병원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상기술	- 계약의 중요성 및 협상방법 - 의료법, 국제협상 기술 사례	2	
지역진출 (4)	중동 지역의 이해	- 지리, 역사, 정치경제 - 의료(의식(醫)주(注) 문화) - 의료제도 특성, 급기사항	2	
	중동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 중동 진출 프로세스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지역진출 (4)	아시아 이해 (중국, 베트남 등)	- 지리, 역사, 정치경제 - 의료(의식(醫)주(注) 문화) - 의료제도 특성, 급기사항	2	
	아시아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 아시아 진출 프로세스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지역진출 (4)	중국 이해	- 지리, 역사, 정치경제 - 의료(의식(醫)주(注) 문화) - 의료제도 특성, 급기사항	2	
	중국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 중국 진출 프로세스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지역진출 (4)	러시아 이해	- 지리, 역사, 정치경제 - 의료(의식(醫)주(注) 문화) - 의료제도 특성, 급기사항	2	
	러시아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 러시아 진출 프로세스 - 비즈니스 모델 사례	2	

□ 교육시간표

교시	1	2	3	4	5	6	7	8	9
시간	09:10	10:10	11:10	12:10	13:10	14:10	15:10	16:10	17:10
시간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일차	병원해외진출 및 프로세스 이해		중식		중동 지역의 이해		중동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2일차	아시아 이해		아시아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중식		중국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3일차	러시아 이해		러시아 진출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		중식		병원해외진출 시 국내법적 문제 국제 협상기술		

04 지역별 교육장소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기관별 교육도 가능합니다.

2014 병원해외진출 전문과정(2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글로벌헬스케어분야 핵심인재 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교육목표

- 병원해외진출 프로세스별 전문지식 및 실무사례 교육
- 병원해외진출 기본·직무·전문역량을 갖춘 병원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02 교육기간 : 총 150시간(온라인 33시간 포함)

과정명	지역	일정	인원	비고
병원해외진출 전문과정(2기)	서울	8. 23.(토) ~ 11. 22.(토) (매주 토, 9시~18시)	25명	총 150시간 (11주)

03 교육대상

- 병원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사업체 등 관련기관 실무자 또는 관심자

04 교육모듈

- 기본역량 : 산업 이해, 글로벌 역량(진출전략, 협상, 프레젠테이션)
- 직무역량 : 진출 프로세스(기획, 추진, 실행 단계), 액셀러닝
- 전문역량 : 지역전문(중동, 러시아, 중국, 아시아), 법률, 계약분야 역량

05 신청방법 및 교육비

- 신청방법 : 보건산업교육본부 학습홈페이지(http://hie.kohi.or.kr) 회원가입후 온라인 수강 신청
- 제출서류 : 자기소개 및 교육활용계획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교육비 : 무료 (\*국가인력개발원소속인 참여 협약기관 재직자에 한함)

06 교육 내용

모듈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방법	비고
기본 역량	글로벌헬스케어 산업 Trend	2	-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이해 - 국내외 산업 트렌드	강의&토의	강의원고 교재
	병원해외진출 이해	4	- 병원해외진출 의미와 현황 - 병원해외진출 경쟁	강의&토의	
	글로벌 진출전략	2	- 헬스케어산업 글로벌진출 전략	강의&토의	
	글로벌 협상력	4	- 협상의 본질 및 협상방법 - 글로벌비즈니스 협상사례	강의&토의	
	실용적인 프레젠테이션	4	- 프레젠테이션 개념 - 프레젠테이션 기술	강의&실습	
	팀 빌딩(교육다짐)	3	- 교육성 상호 이해하기 - 성공적인 교육다짐	강의&토의	
직무 역량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기획1	4	- 시장조사 및 타겟설정 - 사업계획 수립 - 네트워크 구축	강의&토의	표준교재 + 강의원고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기획2	4	- 사전타당성 분석 - 진출전략 및 모델 수립 - 자금 계획	강의&토의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추진1	4	-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세부계획 - 현지법인 설립 - 인허가 절차 확인	강의&토의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추진2	4	- 자금조달 - 건축 및 설계 - 조직 및 매뉴얼 구축	강의&토의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추진3	4	- 마케팅 전략 - 사업실현 및 관리 - 파트너, 마케팅, 내부구조 측면 전략	강의&토의	
	병원 해외진출 프로세스 심화1	4	- 의료산업권 파악 - 의료문경 해결방안 검토	강의&토의	

모듈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방법	비고
병탄핵외진술 역선라닝		4	- 역선라닝1 - 토의/토의	토의/토의	그룹별 & 개인별
		4	- 역선라닝2 - 토의/토의	토의/토의	
		4	- 역선라닝3 - 토의/토의	토의/토의	
		4	- 역선라닝4 - 토의/토의	토의/토의	
		4	- 역선라닝5 - 토의/토의	토의/토의	
전문 역량	지역 전문가 되기	중동	- 중동 의료시장 이해(2)	강의/토의	강의연고 + 참고서적
			- 중동 해외진출 사례(2)	사례/토의	
		러시아(CIS)	- CIS 의료시장 이해(2)	강의/토의	
			- CIS 해외진출 사례(2)	사례/토의	
	중국	- 중국 의료시장 이해(2)	강의/토의		
		- 중국 해외진출 사례(2)	사례/토의		
	아시아	- 아시아 의료시장 이해(2)	강의/토의		
		- 아시아 해외진출 사례(2)	사례/토의		
법률 전문가 되기	법적문제	- 관련 의료법	강의/토의	표준교재 + 강의연고	
		- 병원 해외진출시 국내-외 법적 문제	강의/토의		
	- 의료분쟁 대응방안	강의/토의			
	- 해외진출 법률리스크 관리	강의/토의			
계약관련	- 계약서 작성 일반	강의/토의			
	- 계약관련 리스크 사례 - 리스크관리 및 해법	강의/토의			
해외선진사례 연수	32	- 해외선진사례 연수	견학		
국제진료 외국어 회화	33	- 건강검진 외국어 회화 - 진료과목 외국어 회화	사이버		
행정 기법	입교식 및 교육안내	1	- 등록 및 교육안내	행정	
	수료식	1	- 평가 및 교육수료	행정	
시간 계		150			

07 교육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 담당자: 이수경 대리 (02)3299-1402, [gh@kchi.or.kr](mailto:gh@kchi.or.kr)

08 교육장소

지역	교육장소	대표전화
서울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대교타워 13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구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729-21 대교타워 13층)	02-3299-1402

※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찾아오시는 길



- > 교통편
  -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 경정선 : 신원역까지 30분 소요된 후 도보 10분거리
    - 경의선 : 신원역까지 40분 소요된 후 도보 10분거리
  - 버스로 오시는 경우
    - 경정선 신원역 하차
      - 1511(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2(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3(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4(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5(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6(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7(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8(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19(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0(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1(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2(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3(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4(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5(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6(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7(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8(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29(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0(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경의선 신원역 하차
      - 1531(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2(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3(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4(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5(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6(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7(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8(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39(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0(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1(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2(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3(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4(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5(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6(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7(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8(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49(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1550(신원역~신원) → 신원역에서 하차

❖ 일정: 2014. 9. 24.(수) ~ 9. 28.(일)

	싱가포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방문 기간	3박 5일	4박 5일
주요 방문기관	- 레플즈 병원 -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 Gleneagles Hospital (Owned by Parkway group) - 보건산업진흥원 지사 - 문화탐방	- 명지국제건강검진센터 - U헬스센터 -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 - 비베아진단센터 - 하바롭스크 주립암센터 - 문화탐방
비용부담	140만원 내외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호텔 및 조식, 전 일정 식사 및 문화탐방 입장료 등 포함)	
비용지원	기관섭외비, 기관통역비, 강사비, 차량비 등	

※ 상기 내용은 참가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헬스케어 교육자료



- 의학용어 언어별 사전  
6개 국어 의학용어 사전 (한/ 영, 중, 일, 러, 아)  
3개 국어 의학용어 소사전 (한, 영 / 일, 중, 러, 아)
- 외국어 회화 책자  
의료인을 위한 외국어회화 (일, 중, 몽, 베)  
의료통역 건강검진편 외국어 회화 (러시아)
-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표준교재  
기초의학, 현장임상, 국제진료, 의료관련 법, 언어별 통역실기
- 국제진료 시나리오 언어별 번역본 (영, 중, 일, 러, 아, 몽,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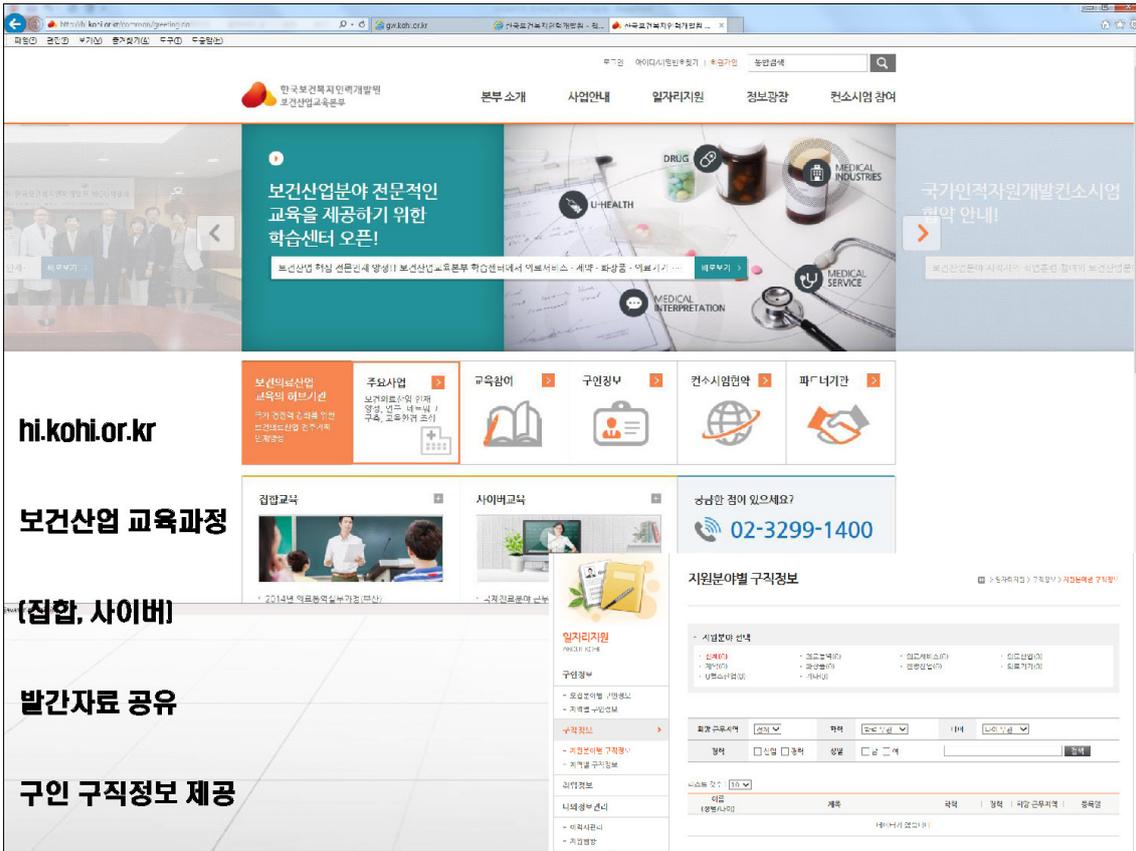
35

## 글로벌헬스케어 교육자료



- 글로벌헬스케어 기초 자료집(Inbound, Outbound)
- 병원국제마케팅 사례집
- 교육자료 제작 예정(2014~2015년)
  - 병원해외진출 사례집
  - 병원국제마케팅 표준교재
  - 병원해외진출 표준교재
  - 외국인환자 리스크관리 표준교재
  - 국제의료코디네이터 표준교재
- 의료통역사 자격체계 개발 연구(2014년)
- 보건산업 중장기 교육계획 연구(2015년)

36



## Note

■ 발표 4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 의료바이오 수출지원 사업소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2014 KOTRA

# 의료바이오 수출지원 사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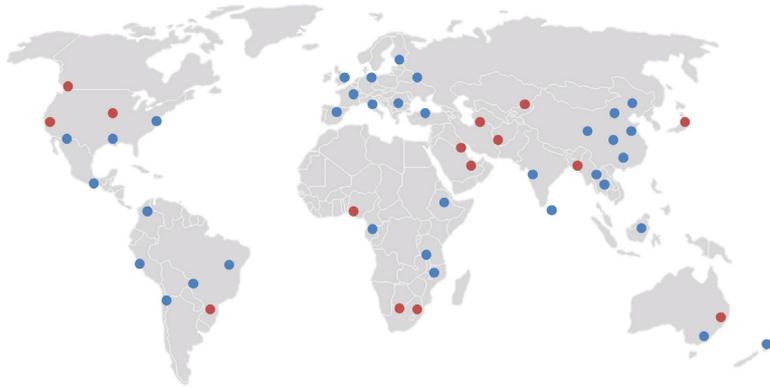
지식서비스사업단

v5

## 목 차

- |                              |           |
|------------------------------|-----------|
| <b>1. 맞춤형 종합사업</b>           | 본사 지원사업   |
| <b>2. 수출상담회</b>              | 해외 바이어 초청 |
| <b>3. 해외전시회 &amp; 수출 로드쇼</b> | 해외 사절단 파견 |

2



2014

Chapter 01

## 맞춤형 종합사업

kotr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지원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연관산업 분야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내용 : 무역관이 발굴 프로젝트 연계, 컨소시엄 및 개별기업이 추진 중인 병원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Developer' 입장에서 집중 지원

4

- 모집기간 : 상반기 일괄모집('14년 3월) 및 수시모집
- 수행시기 : 연 중(총 10개 프로젝트 수주지원)
- 지원규모 : 현재, 2개 컨소시엄 및 4개 모듈 지원 중
  - ('12) 5개 컨소시엄 ; ('13) 6개 컨소시엄 및 4개 모듈 지원
- 지원내용
  - ① 시장조사 · 네트워킹 · 현지 파트너 발굴 · 프로젝트 추가 발굴
  - ② 행사지원 - (발주처 초청 · 현지실사 · IR · MOU · 계약체결식)
  - ③ 법률 · 입찰지원- (계약 · 현지법률 자문 · 입찰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
- 주요성과
  - ('14. 1) 클래스윈, 몽골 Summit병원 의료설비 · 무균수술실 시스템 수출
  - ('14. 6)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 사우디 국가방위부 군병원 HIS 수출

5

- 기타 추진 사업
  - ① 글로벌 컨소시엄 파트너링 지원
    - ('13.9) 스페인 OPERA社, 중남미 3개국 프로젝트
    - ('14.5) SIEMENS社, 몽골 ADB 프로젝트
  - ② 주요 중점국가 현지 사절단 파견
    - ('14. 하반기) 브라질 병원 프로젝트 - 의료IT 사절단
  - ③ 해외 병원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상담회(연 1~2회 개최)
    - ('14.10) BEXCO, 의료IT 전시회 內
  - ④ 개별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핀포인트 상담회(수시)
    - ('12.12) 사우디 KKMC(King Khalid Medical City) 사절단
    - ('13.5) 콜롬비아 국방부 사절단
    - ('14.2) 사우디 국가방위부 사절단
  - ⑤ 유관기관 공동협력사업(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관련)
    - 통합지원체계 구축 : KHIDI · KOHI · KEXIM · KDB 공동지원

6



### 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요에 따른 해외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상반기 일괄모집('14년 3월)
- 수행시기 : 연 중(총 20개사 지원)
  - 총 20개사 지원(의약품·의료기기·한방바이오 기업 등)
- 지원내용
  - ① 시장동향, 등록 및 인증관련 정보, 마케팅행사 정보
  - ② 해외바이어 및 현지 유관기관 발굴
  - ③ 참가 기업별 타겟지역의 해외바이어와 1:1 상담주선
  - ④ 방한 바이어 상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참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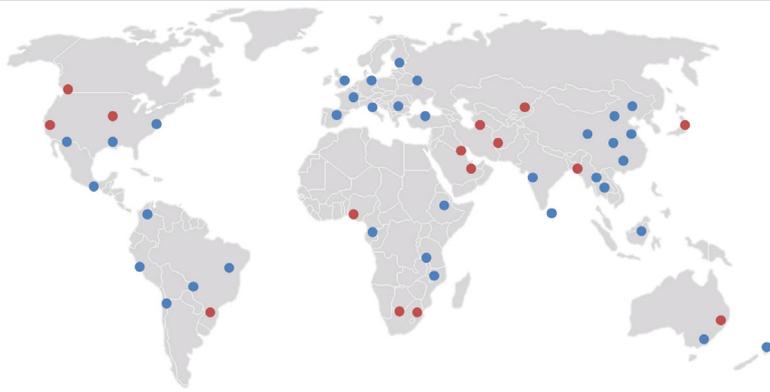
7



### 국내 의료기기·의약품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지원 사업(제품공급·기술협력·공동R&D)

- 모집기간 : 연 중(모집개시 : '14년 4월)
- 수행시기 : 연 중(해외수요 발굴 시 수시 선정 및 지원)
- 목표기업 : 글로벌 상위 10대(의료기기)·20대(의약품) 기업
-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사업
  - ① 구매조달 : 글로벌기업 수요분석, 산업별 매핑, 핀포인트 상담회
  - ② 기술개발 : 정부 R&D자금지원 및 컨설팅, 국책연구소 연계 지원
  - ③ 인적자원개발 : 글로벌 수요연계 기술교육(Gap Closing)
  - ④ 기업인프라 : IP전략, 인증, 기술거래, M&A

8



2014

Chapter 02

수출상담회

kotr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1차)

-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와 연계, 국내 의약품·바이오 분야  
- 수출·기술협력·공동 R&D 지원사업 (의약품·바이오)



- 기간 및 장소 : '14.09.26 & 9.30 - 충북 오송 엑스포 전시장
- 대상기업 : 국내 의약품·바이오 분야 기업 (<http://osong2014.or.kr>)
- 지원내용 : 해외 유력바이어 100개사 내외 초청, 국내기업과 1:1 상담기회 제공

10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 (2차)

-  '14년 최초로 개최되는 의료IT 전시회와 연계, 의료기기 · 의료IT분야  
- 수출 · 기술협력 · 공동 R&D 지원사업 (의료기기 · 의료IT분야)



- 기간 및 장소 : '14.10.28 - 부산 BEXCO
- 대상기업 : 의료기기 · 의료IT 분야 · 병원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상담회
- 지원내용 : 해외 유력바이어 100개사 내외 초청, 국내기업과 1:1 상담기회 제공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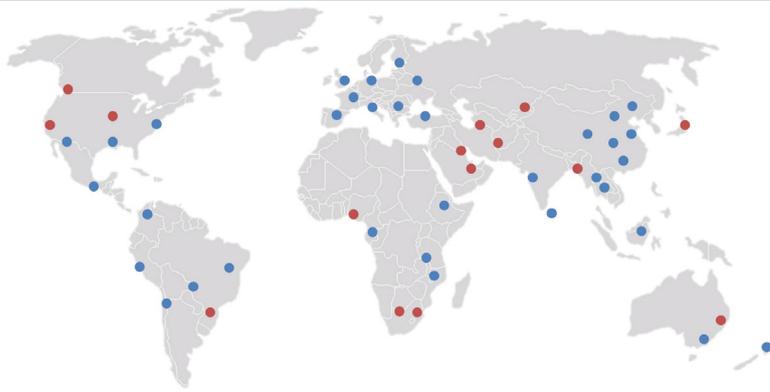
## 제천 한방바이오 수출상담회

-  국내 한방 · 바이오 분야의 수출산업화 지원 사업



- 기간 및 장소 : '14.9.24 - 충북 제천
- 대상기업 : 제천 한방바이오 분야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유력바이어 40개사 내외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기회 제공

12



2014

Chapter 03

## 해외전시회 & 수출로드쇼

kotr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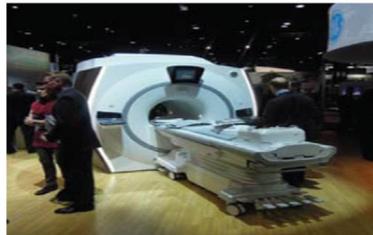
###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 주요내용 :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사선, 의료기기 종합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 대상기업 : 방사선 의료기기 및 부품, 소프트웨어 제작사, 유통사
- 기간·장소 : '14년 11월 30 ~ 12월 5일 - 미국 시카고



### 세계 의약품 전시회(Cphi Worldwide)

- 주요내용 : 세계 최대 의약품 전문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 대상기업 : 원료의약품 · 완제의약품 · 의약외품 등 취급기업
- 기간·장소 : '14년 10월 7일 ~ 9일 - 프랑스 파리



14



### 중동 의료수출 로드쇼(신규시장 개척 지역 진출지원 사업)

- 주요내용 : 의약품 · 의료기기 · 한방바이오 분야 1:1 수출상담회
- 대상기업 : 국내 의약품 · 의료기기 · 한방바이오 분야 및 유관기관 등 10개사
- 기간·장소 : '14년 6월 14일~19일 - 테헤란(이란), 암만(요르단)



### 일본 의약품 파트너링 로드쇼

#### 국내 의약품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 및 1:1 수출상담회
- 대상기업 : 의약품 수출기업 12개사(원료 및 완제 의약품 · 바이오 신기술)
- 기간·장소 : '14년 7월 7일~11일 - 도쿄 · 오사카



### 동유럽 의료수출 로드쇼

- 주요내용 :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등록제도 설명회 및 1:1 수출상담회(예정)
- 대상기업 : 국내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15개사 내외
- 기간·장소 : '14년 12월 2째주 - 바르샤바(폴란드), 모스크바(러시아)

15

# 감사합니다.

지식서비스사업단

전승렬 전문위원

samueljun@kotra.or.kr 02) 3460-7426

**Note**

## Note

■ 발표 5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산업은행 업무소개-

한국산업은행  
(KDB 컨설팅부)

대한민국 발전의 금융엔진, 글로벌 KDB

## 산업은행 업무소개

 KDB산업은행 컨설팅부

 KDB산업은행

“Fly Together Beyond Best”

고객가치의 극대화

최고의 프로젝트 경험과 풍부한 금융 노하우를 지닌  
산업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KDB산업은행  
컨설팅부

# Contents

## I. 컨설팅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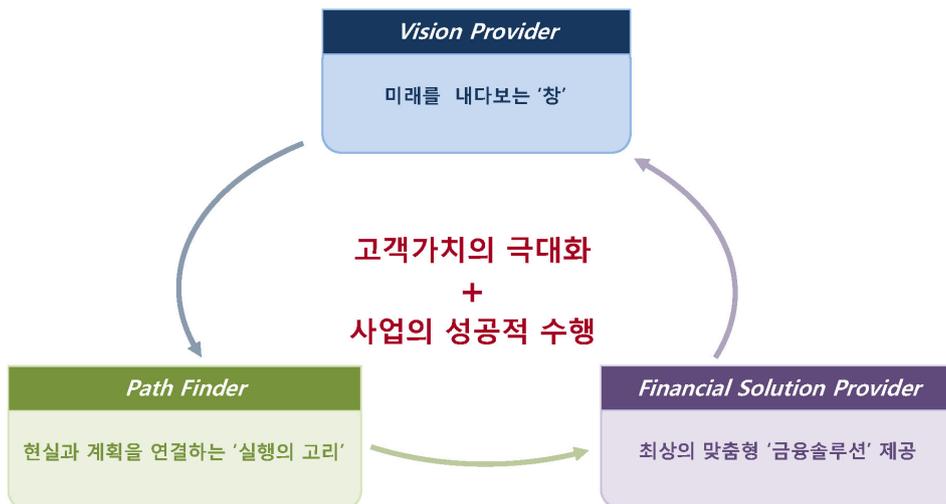
1. 컨설팅부 개요
2. 컨설팅 분야
3. 주요 Project 수행 사례

## II. 금융/투자 업무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사모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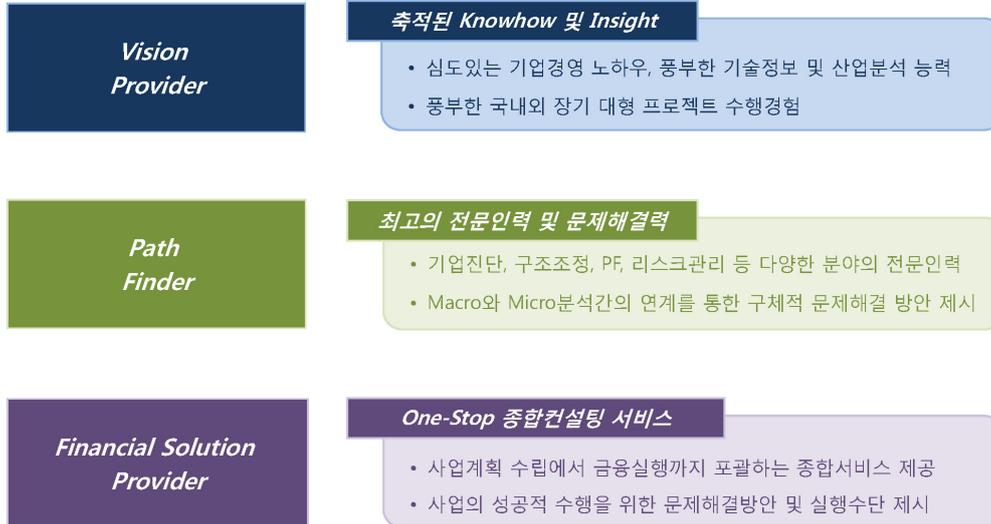
## 1. 컨설팅부 개요 \_ Mission

한국산업은행 컨설팅부는 국내 최고의 기업·투자금융 전문은행인 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의 컨설팅업무 담당부서로서 **Client의 탁월한 경영성과 창출**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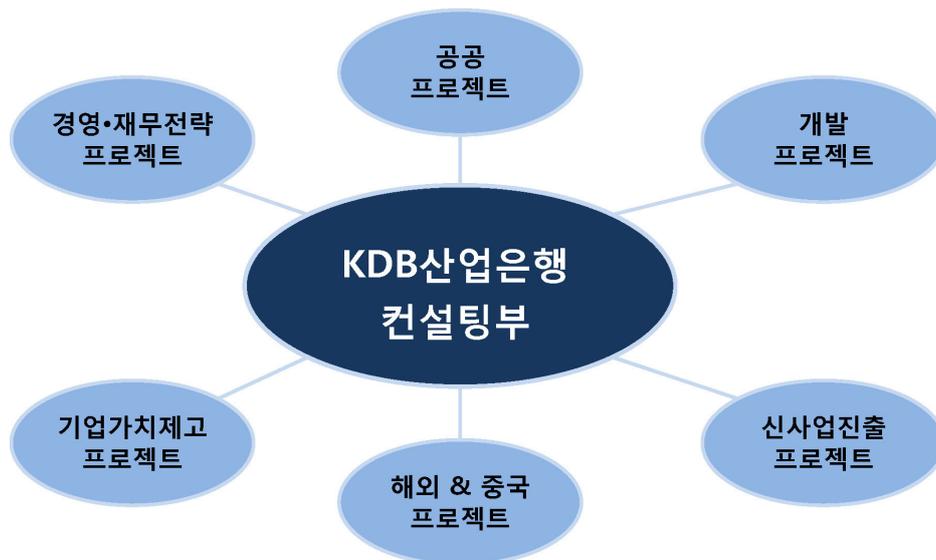
## 1. 컨설팅부 개요 \_ 역량

컨설팅부는 Client가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 탁월한 Mission 달성 역량 보유



## 1. 컨설팅부 개요 \_ 프로젝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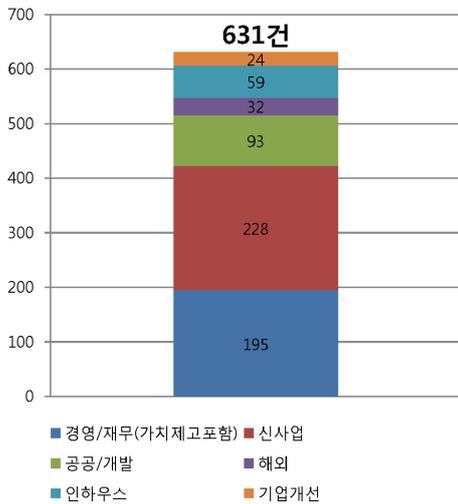
컨설팅부는 공공프로젝트, 경영전략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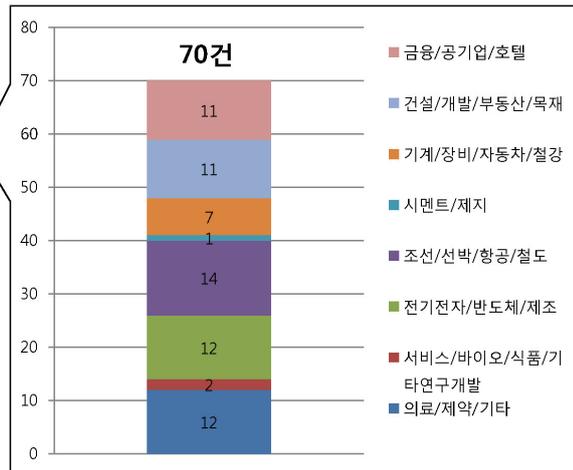
## 1. 컨설팅부 개요 \_ 분야

2003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631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

컨설팅 분야별 비중(2003~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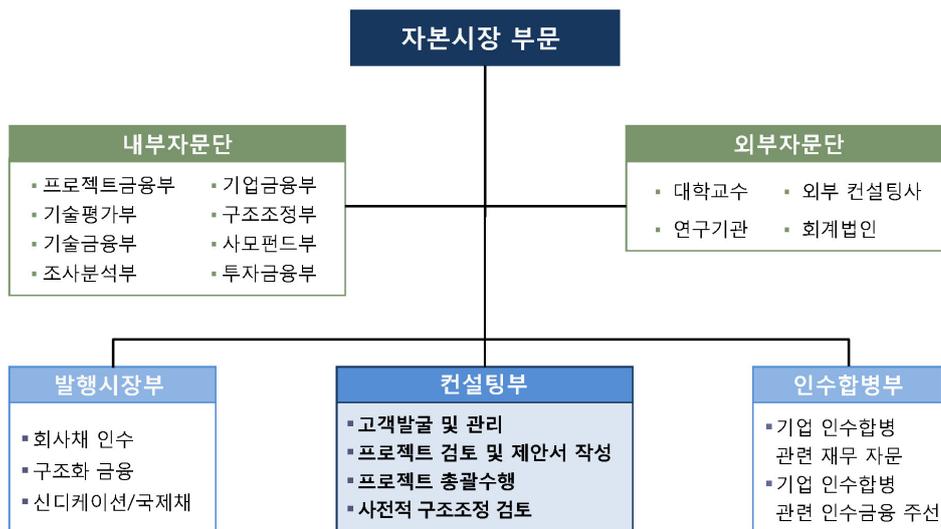


프로젝트 수행 업종 (2013년)



## 1. 컨설팅부 개요 \_ 전문가 집단

컨설팅부는 Client가 필요로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 글로벌 네트워크, 금융자회사 및 IB 인프라 보유



## 1. 컨설팅부 개요 \_ Global Network

컨설팅부는 국내 최고 수준의 Global Network를 활용한 Research 및 Networking 능력 보유



## 1. 컨설팅부 개요 \_ 장점

컨설팅부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군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Customized Solution 창출에 있어서 Global Top Consulting Firm에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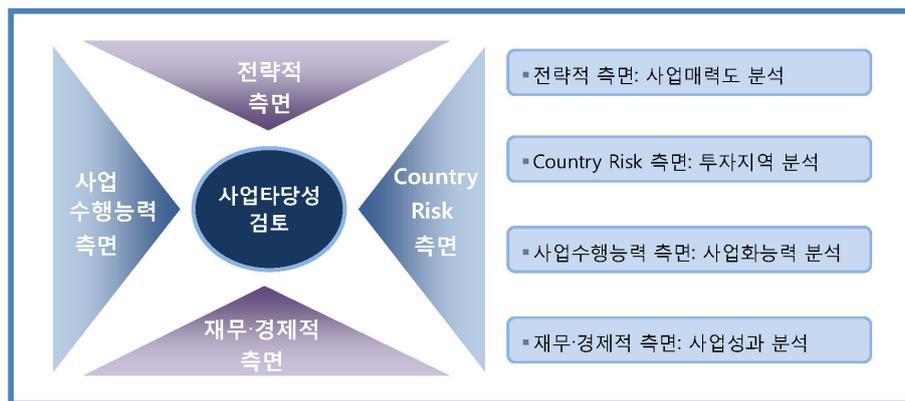
## 2. 컨설팅 분야 \_ 신사업진출 프로젝트

### ❖ 신사업진출 프로젝트



## 2. 컨설팅 분야 \_ 해외진출 프로젝트

### ❖ 해외진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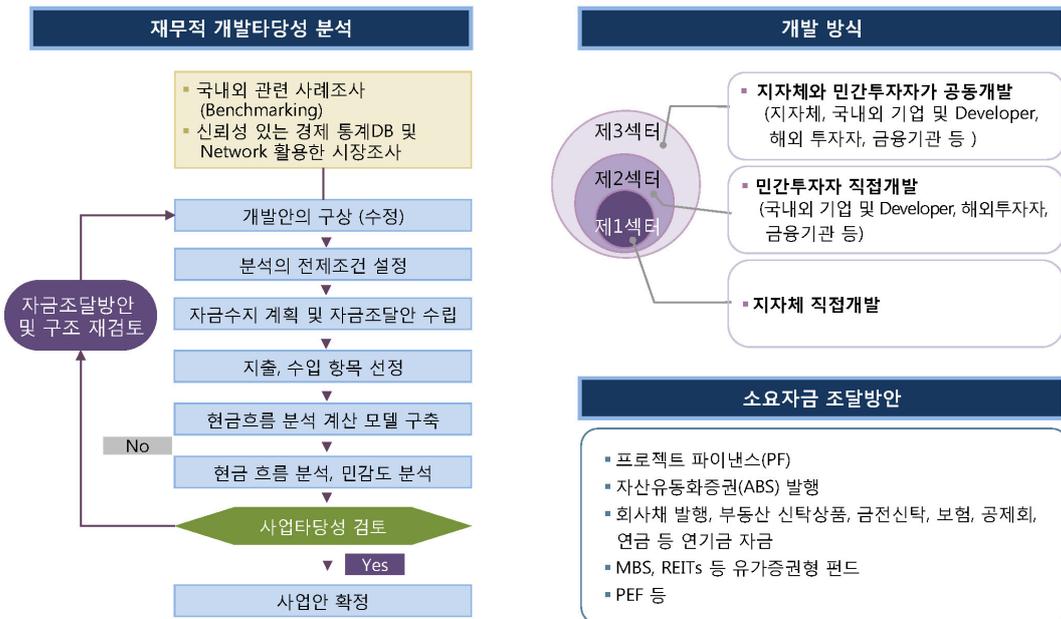
## 2. 컨설팅 분야 \_ 경영전략 프로젝트

### ❖ 경영전략 프로젝트



## 2. 컨설팅 분야 \_ 개발 프로젝트

### ❖ 개발 프로젝트



### 3. 주요 Project 수행사례 \_ King Fahad Medical City 의 Twinning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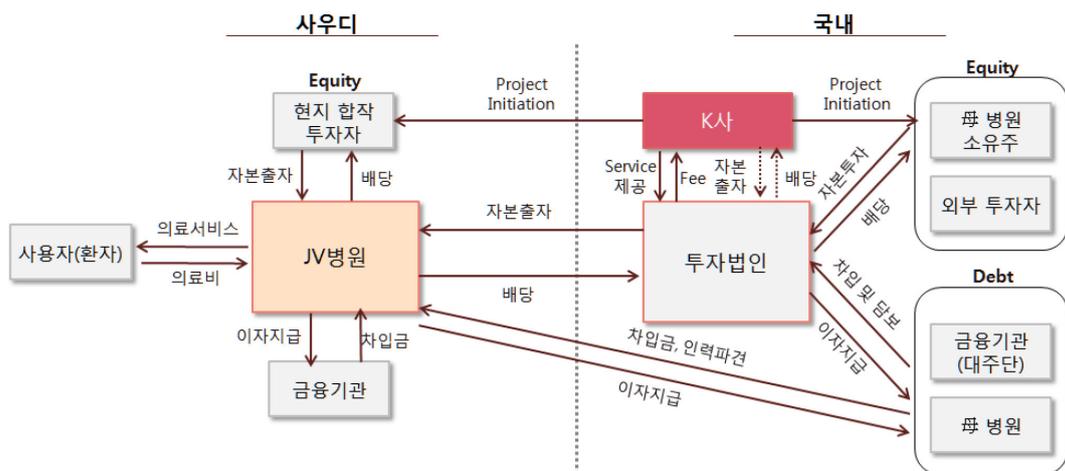
❖ 사우디 King Fahad Medical City 의 Twinning Project 제안을 위한 컨설팅



KDB산업은행  
컨설팅부 15

### 3. 주요 Project 수행사례 \_ 사우디 의료 진출 Financing Structure 수립 컨설팅

❖ 국내 의료기관의 사우디 진출 지원을 위한 Financing Structure 수립 컨설팅



KDB산업은행  
컨설팅부 16

### 3. 주요 Project 수행사례 \_ 인도네시아 제화공장 설립 사업성검토 및 파이낸싱

❖ S사 인도네시아 Sukalarang Sukabumi지역 대지면적 52,000㎡(건축면적32,000㎡) 규모의 제화라인 공장건설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수행하고 파이낸싱 제공

주요 개요		2공장 예상 시설규모		
계획사업명	제2공장 건설	생산라인	생산라인	CAPA/면적
계획사업장	Sukalarang Sukabumi	① Sports Shoes	Cell 라인: 10라인	50만족
대지면적	52,000㎡/건축면적 32,000㎡	② Stock-Fit	10 라인	50만족
공사기간	2012. 6월 ~ 2012. 8월	③ 2차가공		50만족
건물 및 설비 Layout		④ 자재창고		50만족
		⑤ 제품창고		50만족
		Injection자재 Phylon (신발중창)	사출기계:8대	50만족
		Outsole Press (신발 고무창)	프레스:20라인	64만족
		→ 제1공장에 설치 예정		

### 3. 주요 Project 수행사례 \_ 미얀마 벌목사업 사업성검토

❖ A사 미얀마 최남단 지역(Tanintharyi Division) 벌목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컨설팅

**Phase 1 : 벌목사업**  
"팜농장(Oil Palm Plantation) 및 팜유 생산공장을 위한 천연림 개발"

위치	• Myanmar 최남단 Tanintharyi Division
면적	• 133,600 에이커 (54,666ha/ 164백만평)
기간	• 11년(2013. 6 ~ 2024. 5)

**Phase 2: 팜 농장 운영**

기간	• 60년(최초 35년+ 25년 연장)
투자 금액	• USD 62백만 예상

2008	2009	2010	2011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시장조사</li> <li>• 미얀마 정부와 사업협의 시작</li> <li>• 대상지역 현장답사</li> <li>• 100%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제안서 제출</li> <li>•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투자승인 신청</li> <li>• 미얀마 정부 LOI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C 최종승인</li> <li>• 현지법인(MAC)설립 신고</li> <li>• 사전 예비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 실시</li> <li>• 사업준비조사 실시</li> <li>• 현지법인 MAC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 환경보호(MOECF) &amp; 임업부(MTE) 계약체결</li> </ul>

# Contents

## I. 컨설팅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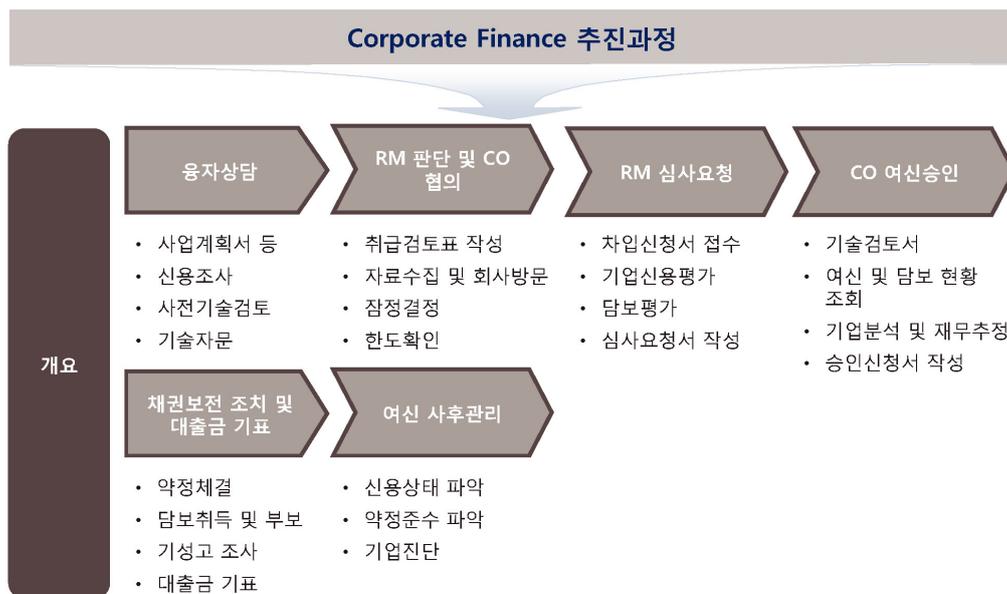
1. 컨설팅부 개요
2. 컨설팅 분야
3. 주요 Project 수행 사례

## II. 금융/투자 업무

1. 기업금융
2. 프로젝트 금융
3. 사모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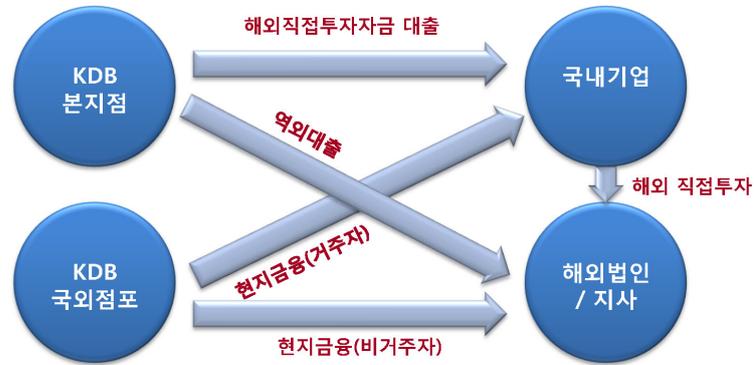
## 1. 기업금융 \_ 추진과정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되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합작 투자자의 신용도, 대상 의료사업의 사업성, 물적담보와 제3자의 인적담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 1. 기업금융 \_ 국제여신

국내 본지점 및 국외점포의 기업금융 담당부서는 해외사업을 위한 국제여신을 제공하며 그 성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역외사모사채 및 현지금융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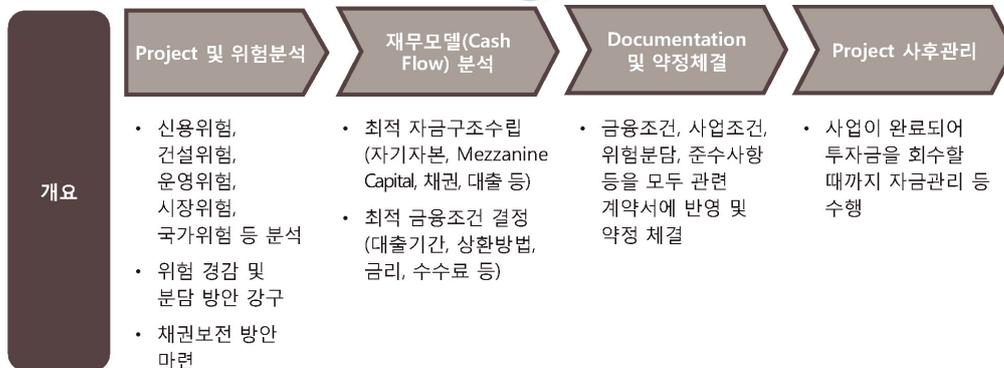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시설/운영)
  - 현지법인 신설 등을 위한 증권/출자지분 취득자금, 기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여하기 위한 외화대부채권 취득자금
- 역외대출, 역외사모사채
  - 국내기업이 투자한 해외법인/지사, 외국소재 외국회사가 국내은행으로 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 현지금융 (외화 시설/운영)
  - 국내기업, 현지법인(지사)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

## 2. 프로젝트 금융 \_ 추진과정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본부는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위험의 경감을 목표로 위험 및 재무모델을 분석하고 금융조건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금융 제공

### Project Finance 추진과정

- 계약관계를 통한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위험의 분산 또는 경감 과정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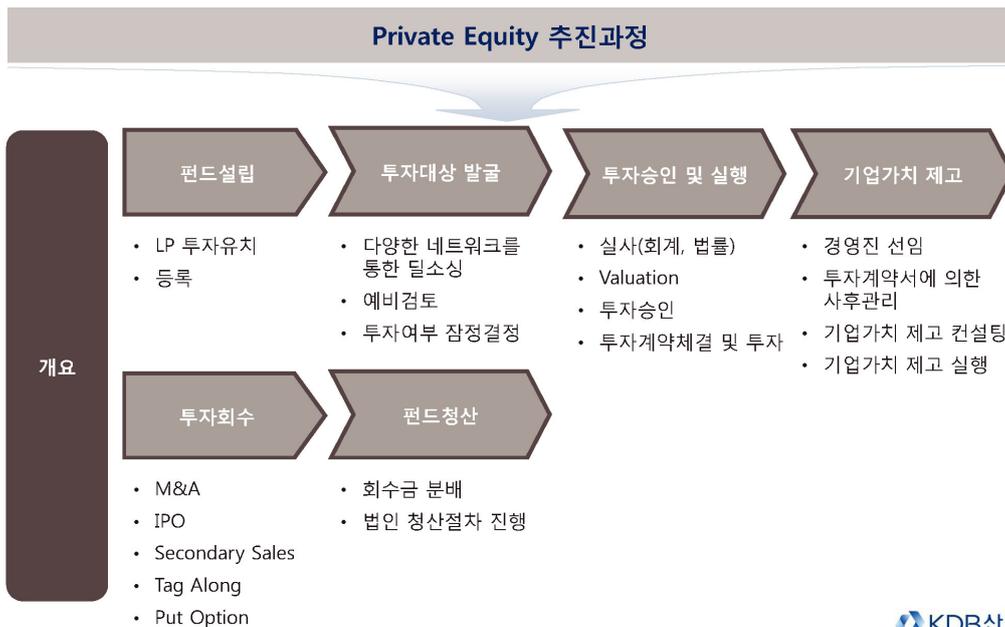
## 2. 프로젝트 금융 \_ 장점

산업은행은 1994년 국내 최초로 Project Finance 를 도입하여 Global 9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사업의 초기단계 부터 사업주와 협의하여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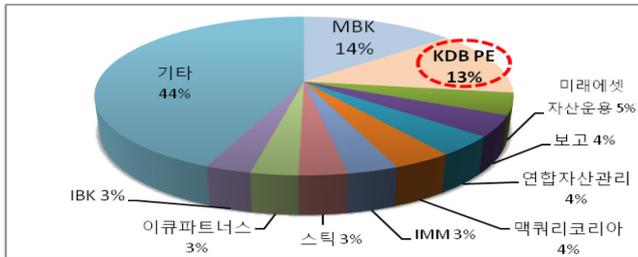
## 3. 사모펀드 \_ 추진과정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자본금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신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이 그 투자 대상으로, 보통주, 우선주, CB, BW 등으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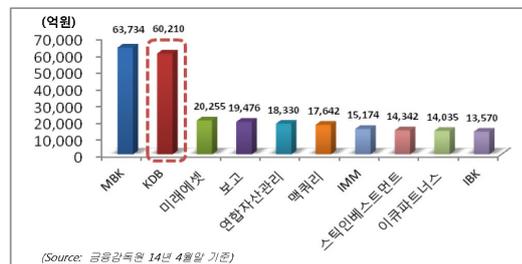


### 3. 사모펀드 \_ 장점

사모펀드부는 2005년 PE Business를 시작한 이래 국내 최고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펀드운용 및 우수한 펀드수익률 실현



[ KDB 사모펀드본부 M/S ]



[ PEF 운용사 League Table ]

# THANK YOU

## Note

■ 발표 6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소개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원제도 개편내용-

한국수출입은행  
(KEXIM 미래산업금융실)



## 수은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후
자 본 금	8조원	15조원
업무조항	열거주의	포괄주의
지분투자	건별 승인 (기재부장관 승인)	연간 총량승인 (대출·보증과 연계)
펀드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분야 :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li> <li>▪ 지분율 한도 : 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분야 : 분야제한 폐지</li> <li>▪ 지분율 한도 : 25%</li> </ul>
채무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 달러 이상 거래중 대출비중 55% 이상</li> <li>▪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 달러 제한 폐지</li> <li>▪ 대출비중 완화(55% → 50%)</li> <li>▪ 연기금, 보험사 등 보증대상 확대</li> </ul>

## 수은법 개정 의의

### ✓ 업무범위 확대

- 수출거래 지원 →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특정물품 등의 수입거래 지원 →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거래 지원 →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 ✓ 거래구조 다양화

- 거래구조 제약(지원대상거래 + 지원대상자 + 지원수단) →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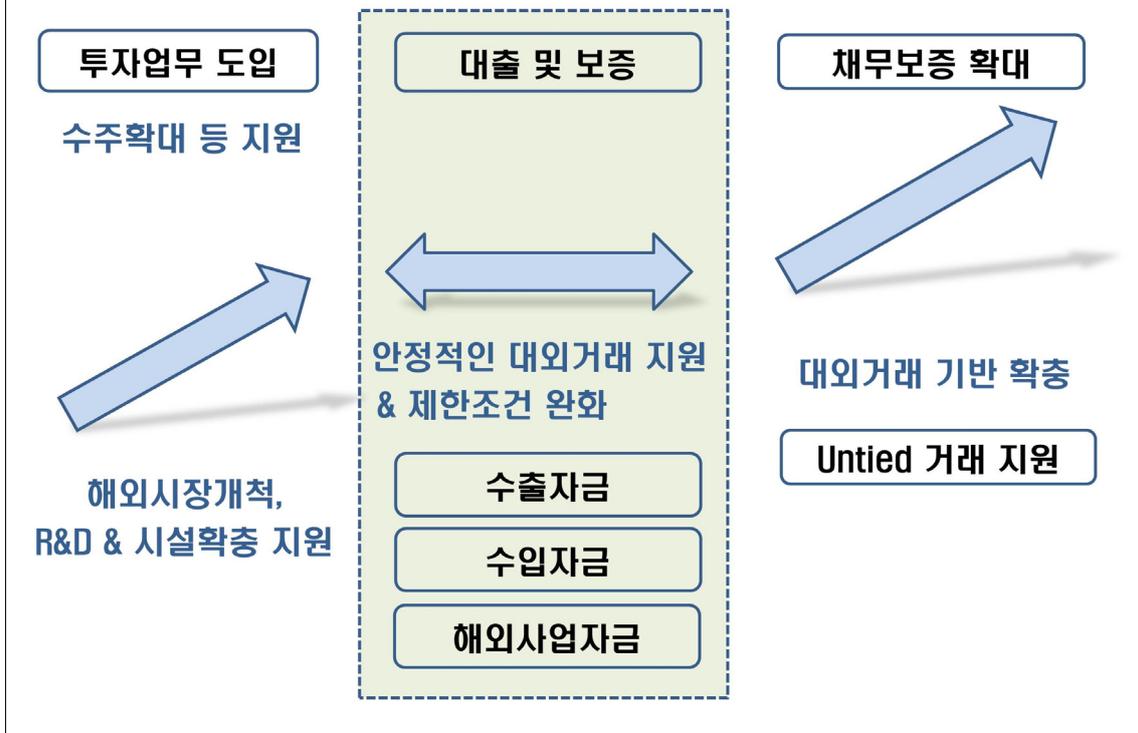
### ✓ 채무보증 확대

- 보증대상을 연기금/보험사까지 확대하고, 1억 달러 이하 중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확대
- \* 법령상 제약완화 : 1억 달러 제한 폐지 및 대출비중 감소(55% → 50%)

### ✓ 투자업무 활성화 (지분투자, 펀드투자)

- 해외사업의 금융조달 확실성을 제고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를 지원

## 대외거래 쉐단계에 걸친 금융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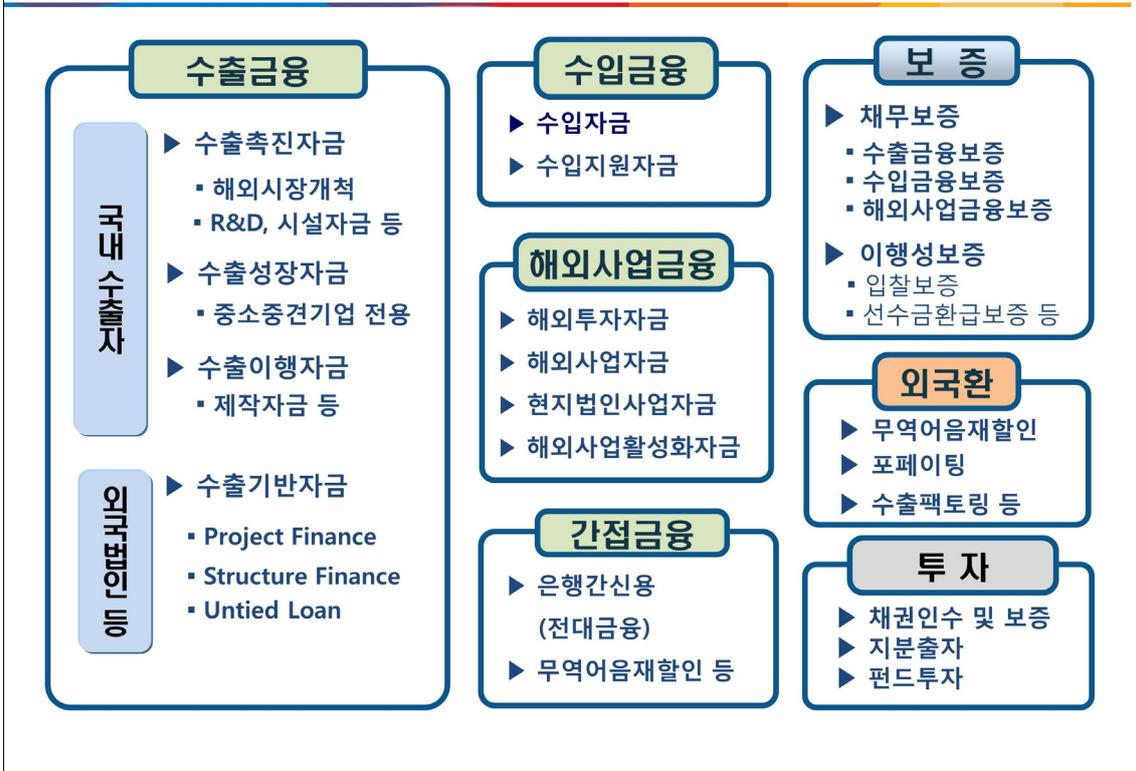
### PART 2

## 금융지원제도 개요

 Korea Eximbank



## 수은의 금융지원 제도



### 수출촉진자금

- ✓ **개요**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R&D)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 ✓ **대상기업** : 중소기업,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 창조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 ✓ **자금용도**
  1. 시설투자
  2.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
  3. 해외시장개척활동
  4.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중소기업 30억원, 그 밖의 기업 50억원)
- ✓ **대출기간** :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10년 이내), 그 밖의 용도(3년 이내)

### 수출이행자금

- ✓ 개요 :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작자금적 성격**)
- ✓ 대상기업 : 국내 수출기업
-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범위 내
- ✓ 대출기간 :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수출기반자금

- ✓ 개요 :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 **차주가 외국의 구매자인 경우 국내 수출기업은 부채증가 없이 수출이행 가능**
- ✓ 자금용도 : (현행) 외국기업의 수입결제자금  
**(신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 (건설기간 중 이자, 용역금액 등 추가지원 가능)
- ✓ 대출기간 : 30년 이내 (수입결제자금은 OECD 협약 등에 따라 통상 5~15년)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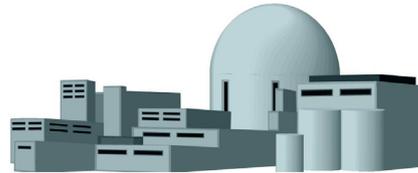
플랜트, 발전소, 병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지원을 위한 금융으로 지급 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기법

### 지원방식

거래의 특성에 따라 수출금융, 해외사업금융,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탄력적 지원

### 특징

- ✓ 별도로 설립된 회사가 차주가 되며, 사업에 대해 무소구 내지 제한적 소구조건으로 금융지원
- ✓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채권보전장치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해외투자자금

- ✓ **개요** :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설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국내기업 앞으로 대출
- ✓ **대상기업** : 투자예정업종에 대해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 **자금용도** : 해외직접투자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중소중견기업, 첨단기술습득 90%, 자원개발사업 100%)



### 해외사업자금

- ✓ **개요**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업 앞 대출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해외사업)
-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신설)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80% (중소중견기업, 첨단기술습득 90%, 자원개발사업 100%)
- ✓ **특기사항** : 시설자금 지원시 국산설비 이용조건 완화



### 현지법인사업자금

- ✓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한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현지법인 앞으로 대출
- ✓ **자금용도**
  - 기존 :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 신설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M&A자금, 제작자금 등)
- ✓ **특기사항** : 장기자금 제약 해소(단기 Bridge loan 등 가능)



### 이중과세방지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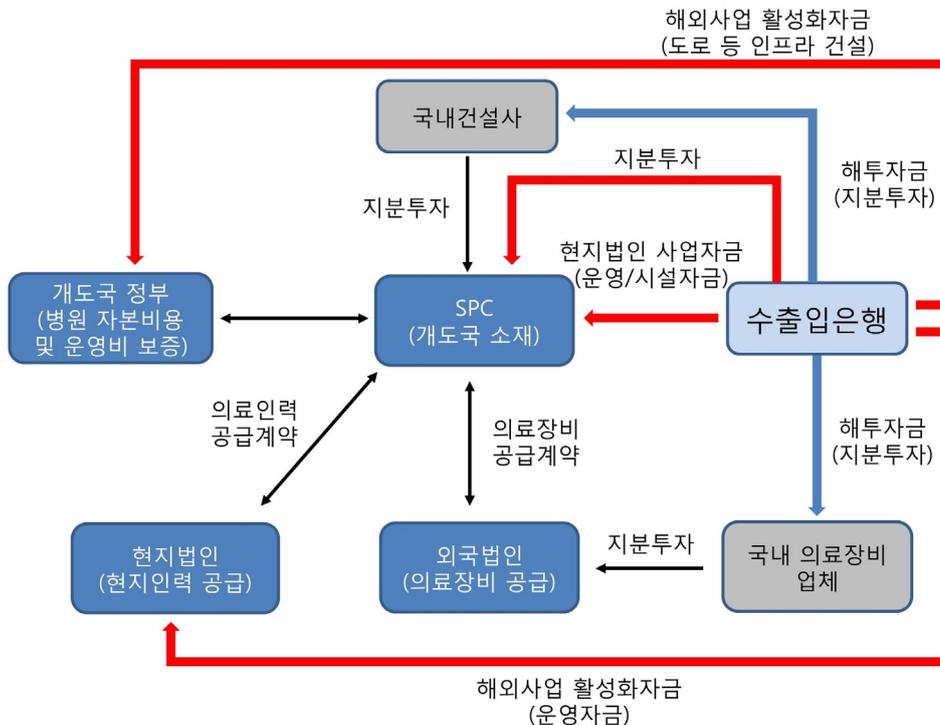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해당국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현지법인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면제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 개요 : 국내기업 및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
-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 ☞ 대형병원을 포함한 해외신도시 개발사업 등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외국인 대상 간접대출방식 지원, 해외자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거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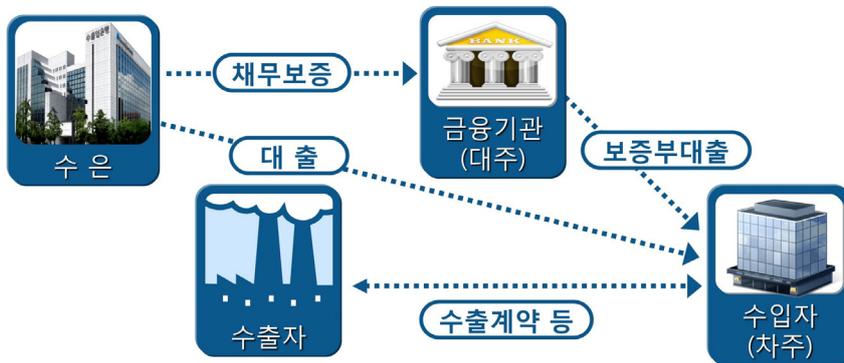


### Case.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활용가능 예 (해외 병원 건설사업)



## 채무보증

- ✓ 개요 : 지원대상거래(수출/수입/해외사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을 보증
- ✓ 보증구분 :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으로 세분화
- ✓ 특기사항 : 채무보증 대상을 은행 외에 연기금, 보험사까지 확대  
1억 달러 이하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지원 확대



감사합니다.

 Korea Eximbank



## Note

■ 발표 7 ■

#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설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의료수출기획팀)

#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4.7.



## Contents



- I. 사업개요
- II. 지원사업내용
- III.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IV. 선정절차
- V. 사업수행평가



# I. 사업개요

## I-1. 지원사업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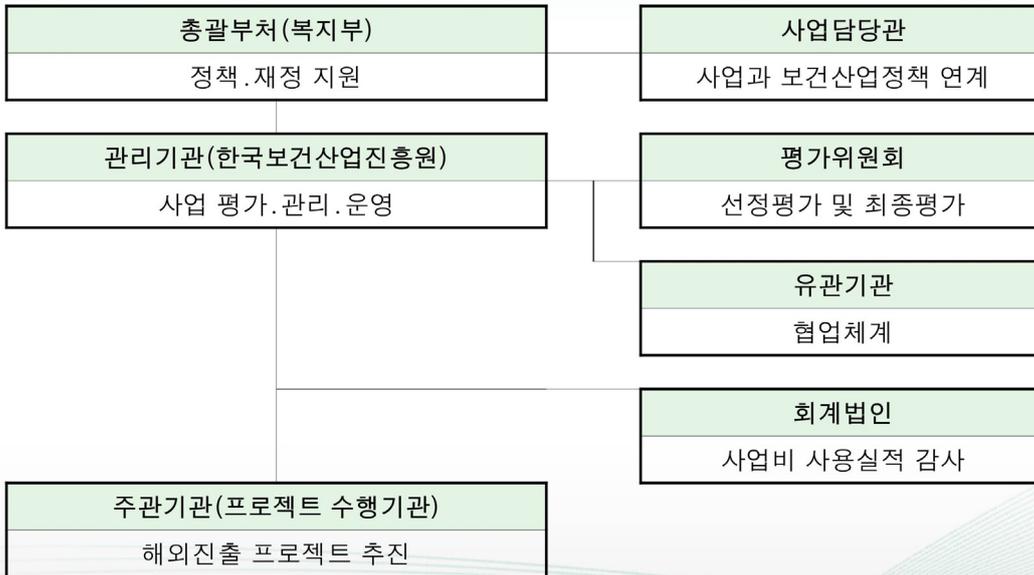


- ✓ 신성장동력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 ✓ 성공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해외계획사업을 맞춤형 지원하여
- ✓ 조기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 ✓ 후발 의료기관 진출의 플랫폼 역할 수행과 동시에
- ✓ 연관산업 진출의 Hub가 될 수 있는 선도적 기관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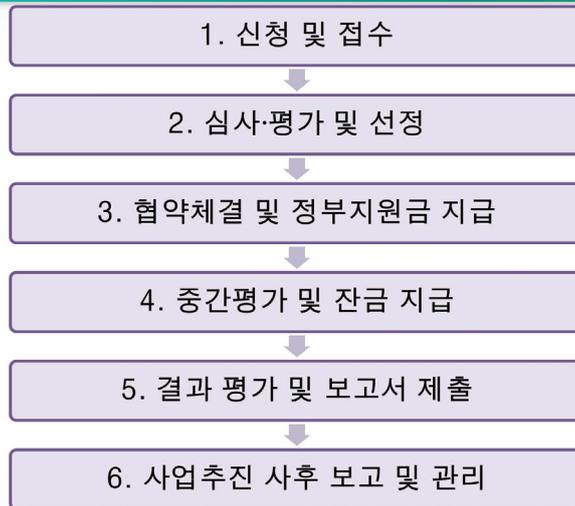
**병원수출 선도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  
후발진출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I-2. 사업추진 체계



## I-3. 사업수행절차



✓ 세부추진일정

'14						'15
7	8	9	10	11	12	1
공고	평가				최종 보고 평가	결과 제출
사업설명회	선정 → 협약체결 → 지원금지급 → 중간평가				평가	사업비 정산

## Ⅱ. 지원사업 내용

### Ⅱ-1. 지원사업 내용



####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 지원규모 : 총 10억 원(W1,000,000,000원, 부가세포함)
  - \* 프로젝트 규모·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사업수행기관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의 30%이상 의무
  - 예) 정부지원금 7,000만원 이면 자기부담금 2,100만원(30%) 이상 의무
- ✓ 지원사업 수행기간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사업 특성에 따라 개별 적용(3~5개월 이내)
- ✓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평가에 의한 선정

## II-2. 지원 프로젝트 범위(대상)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위탁]운영하거나, 의료기술을 제휴·전수,  
또는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를 수출하는 것,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  
- 기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독 또는 현지 파트너 공동으로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통한 연관 산업\* 진출이 가능한 사업  
\* 건설, 의료기기, 의료전산 시스템(HIS), 의약품, 컨설팅 등

## I-3. 지원 내용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Process 전주기의 각 단계별 사업추진 소요비용\*\*

· 사전조사 ◊ 사업계획 수립 ◊ F/S ◊ 현지법인 및 병원설립·설계·건축 인허가 ◊ 인력채용·교육 ◊ 홍보마케팅 ◊ 확장·이전 등

#### <선정된 기관에 대한 후속 지원>

- 정부간협의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등 사업추진 G2G활동 지원
- 사업추진을 통해 검증된 우수프로젝트는 금융지원 연계 가능
- 정부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 I-3. 지원 내용

### 소요비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 지원 내역	유의 사항 및 제출서류
컨설팅 (F/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시장분석, 재무(경제성), 법률, 경영, 마케팅 등)</li> <li>사업제안서작성(RFP, Propos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서 사본 제출</li> <li>* 신청 시 미 체결 시 사업자 선정 후 사업수행 착수 시 계약서 사본 제출</li> </ul>
인허가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수수료</li> <li>전문가 자문료 및 현지출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 전문가 이력서 제출</li> </ul>
교육훈련(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채용인력 교육 (의료인, 비 의료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함</li> <li>교육계획서 별도 첨부</li> </ul>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중요 관계자 초청 경비 지원</li> <li>현지 대상 마케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현지 홍보 위주 일 것</li> <li>*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50%이상)</li> <li>초청/행사 계획서 별도 첨부</li> </ul>
기타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용품구입비, 수수료, 도서인쇄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제반 경비는 지원 사업비의 5% 범위 내 사용</li> </ul>

## I-3. 지원 내용

### 소요비용 지원내용\*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 지원 사업비의 30% 인정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용품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li> <li>간행물 등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li> <li>기타경비</li> </ul>	기타 제반경비는 지원 사업비의 5% 범위 내 사용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li> <li>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자문료)</li> <li>광고료 및 광고료</li> </ul>	
	임차료	임차료	
	위탁사업비	용역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사업비의 30% 인정
	국외업무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외빈초청경비(여비), 회의비 등	

\*지원 사업비 신청은 [붙임2.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

지원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 I-4.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4년 정부지원금 집행 완료 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14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연내 사업완료의 필요성 및 사업 참여도 재고를 위해 1, 2차에 한해서 접수기간 지정. 운용
  - 1차 접수: 7/25(금) 18:00까지
  - 2차 접수: 8/8(금) 18:00까지
- 1, 2차 접수를 통한 지원시행 후에도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수시접수. 선정 예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비 집행 완료 시 “지원사업 종료” 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http://www.khidi.or.kr)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kohes.khidi.or.kr](http://kohes.khidi.or.kr)

## I-5. 지원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 이내(2014년 12월 31일까지)
- \*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사업 특성에 따라 개별 적용

## Ⅲ.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Ⅲ-1.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연관기관\*

\* 건설, 의료IT, 의료기기·장비, 제약, 금융, 컨설팅, 관련 협회 등

##### 사업책임자

-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연관기관\*을 프로젝트 총 사업 책임자로 하되,
-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기관이 사업(프로젝트)의 총 사업 책임자일 경우에는, 신청 컨소시엄 내에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 되어야 함

##### 컨소시엄

- 선택사항
- 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의무부담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은 필히 적정 비율 내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 Ⅲ-1. 제출서류

### 제출기한, 장소

- **제출기한:**
  - 1차 접수: 7/25(금) 18:00까지
  - 2차 접수: 8/8(금) 18:00까지
- \* 수시접수
- **제출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kohes@khidi.or.kr](mailto:kohes@khidi.or.kr)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제출공문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0부
- 서약서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총 사업책임자(기관)의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총 사업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컨소시엄 추가서류]

- 총 사업 책임자를 명시한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IV. 선정절차

## IV-1.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 IV-1. 선정 절차

### 심사·평가

#### 서류 심사

- 사업계획서 내용 및 산출내역서 검토

→ 서류 심사에서 발표평가 대상 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

#### 발표 평가

- 발표평가 대상 기관은 발표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항목 : 사업의 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 구성, 신청기관(기업)현황, 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가능성, 신청 예산의 적정성

\* 최종심사결과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

# IV. 사업수행평가

## IV. 사업수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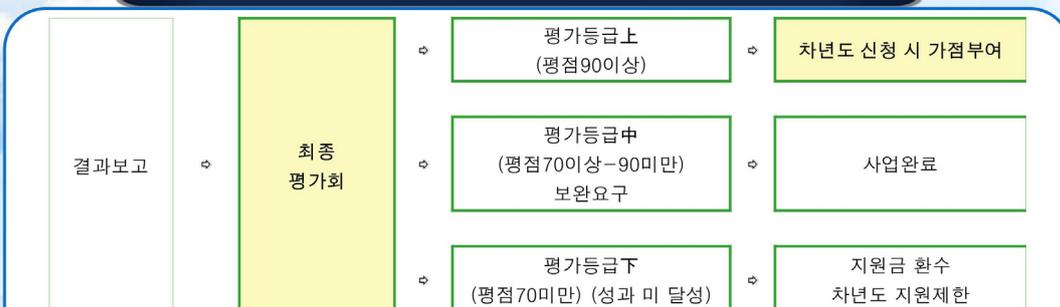


### 중간평가

- 90점 이상(“상”), 90점 미만~70점 이상(“중”) : “계속”
- 70점 미만(“하”) “중단”

➔ 평가 결과 “계속” 일 경우 잔금(30%) 지급

### 최종평가



주관기관은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가 최종 종료(해외진출 안착 또는 수출)될 때까지 관리기관의 현황보고 요청이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문의사항

-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kohes.khidi.or.kr/>  
→ 게시판Q&A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HES** Korean Overseas Hospital Expansion Services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사업소개 | 알림마당 | 해외진출정보 | **게시판** | 지원사업  
Q&A



게시판

Q&A

홈 > 상담컨설팅 > Q&A

Q&A

## 문의사항

구경미 043.713.8497

정치중 043.713.8868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Q&A

**KHID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Note

【붙임 1】

#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14. 7

# I. 사업개요

## □ 목적

- 신성장동력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해외계획사업(프로젝트)의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에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 후발 의료기관 진출의 플랫폼 역할 수행과 동시에 연관산업 진출의 Hub가 될 수 있는 선도적 기관들을 조성하고자 함

⇒ 병원수출 선도 프로젝트(leading project) 분석을 통해 후발진출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 추진배경

- 병원중심의 한국형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적 역량·마인드 육성 및 전문가 양성,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 시급
  - \*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장벽은 초기 해외시장조사·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담,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부족, 전략 부재 등으로 파악
- 다양한 진출 모델 육성·지원 및 지식공유 기반 구축 필요
  - 병원중심의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잠재력 및 공공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진출모델 육성 및 지원기반 구축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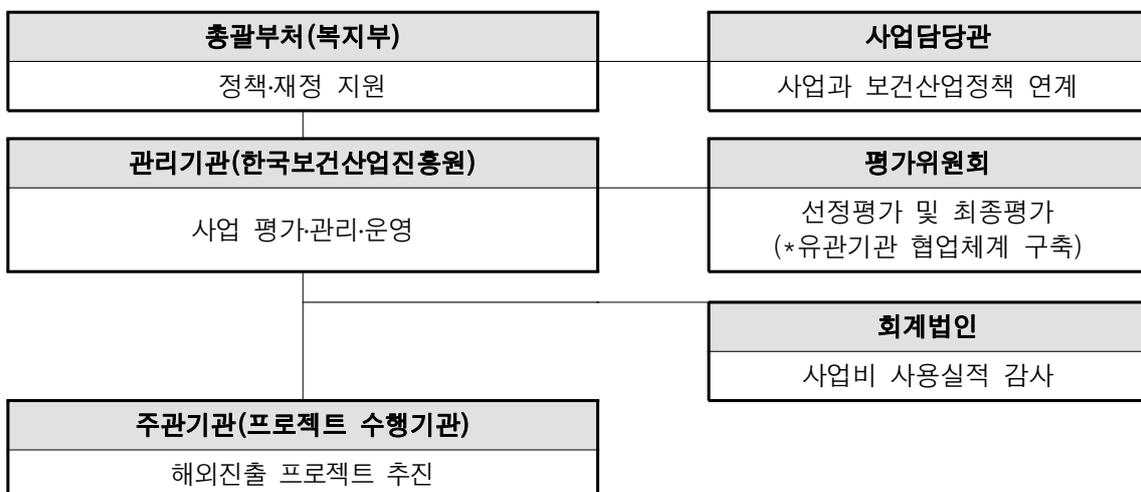
## □ 용어정의

- “관리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 함
- “신청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시스템(서비스) 해외진출 관련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말 함

- “주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사업(프로젝트)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지원금을 관리 및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 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 함(권소사업 참여사)
- “수행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함
- “사업 책임자”라 함은 본 사업(프로젝트)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 함
-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수행기관이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사업비) 중 관리기관이 지원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말 함
- “지원 사업비”라 함은 수행기관이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사업비) 중 관리기관이 지원하기로 협약한 금액과 수행기관의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 함
- “지원사업 실시기간”이라 함은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지원사업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간을 말 함

## □ 추진체계 및 역할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재원을 일괄 확보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기관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리 총괄</li> <li>•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승인</li> <li>• 성과관리 및 결과 확인 등</li> </ul>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li> <li>2.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3.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처리</li> <li>4.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li> <li>5. 사업 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li> <li>6. 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li> <li>7.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li> </ol> </li> <li>• 추진사업 실적·운영현황 정기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복지부)</li> </ul>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및 자문</li> <li>• 주관기관 사업 진행 자문</li> </ul>
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의 사업정산 공정성 확보 및 청렴한 사업집행을 위해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 감사</li> </ul>
수행기관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사업 계획 이행</li> <li>• 추진사업 실적·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성과포함)</li> <li>• 정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li> </ul>

○ 프로젝트 <진단-평가-선정-컨설팅>에 **유관기관의 핵심역량을 접목, 맞춤형 지원** 실행

## □ 사업수행 절차

단 계	절 차
↓	
① 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드시 포함 -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제출</li> </ul>
↓	
② 심사·평가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적합성 등 심사·평가하여 <b>주관 기관 선정</b> - 사업 수행범위의 타당성 등 확인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 범위 협의 및 조정</li> </ul>
↓	
③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약 체결</b> ○ 주관기관은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14일 이내에 선금금(정부지원금의 70%) 지급</li> </ul>
↓	
④ 중간평가 및 잔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은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내부 또는 외부)를 구성하여 평가: <b>“계속”, “중단”을 결정</b>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잔금 30%를 지급, “중단”은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li> </ul>
↓	
⑤ 결과평가 및 정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기관: 결과보고 및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20일 이내 정산서 제출(회계법인)</li> <li>○ 관리기관: 지속 지원, 사업 완료, 환수 여부 평가</li> </ul>
↓	
⑥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기관: 지속적인 해외진출 사업 추진</li> <li>○ 관리 기관: 사업추진 지속 점검</li> </ul>

※ 상기일정은 협약 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II. 지원사업 내용

### □ 지원 규모

- 정부지원금 총 예산 **십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1,000,000,000)
  - 사업(프로젝트) 지원금액: **최대 일억원 범위 내 지원**
    - ※ 프로젝트 규모·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최종 지원내용 및 비용규모, 사업수행기간은 전문가(전문가자문단) 심의를 통해 결정
  - 사업수행기관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의 **30%이상 의무**
    - ※ 자기부담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의무부담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은 필히 적정 비율 내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 □ 지원 프로젝트 범위(대상)

-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위탁)운영하거나, 의료기술을 제휴·전수, 또는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를 수출하는 것,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
  - 기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독 또는 현지 파트너 공동으로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통한 연관 산업\* 진출이 가능한 사업

\* 건설, 의료기기, 의료전산 시스템(HIS), 의약품, 컨설팅 등

###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및 발표(PT) 평가에 의한 선정

## □ 지원내용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Process 전주기\*의 각 단계별 사업추진 **소요비용\*\***

\* 사전조사 ⇨ 사업계획 수립 ⇨ F/S ⇨ 현지법인 및 병원설립·설계·건축 인허가 ⇨ 인력채용·교육 ⇨ 홍보마케팅 ⇨ 확장·이전 등

<선정된 기관에 대한 후속 지원>

- 정부간협의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등 사업추진 **G2G활동 지원**
- 사업추진을 통해 검증된 우수프로젝트는 **금융지원 연계 가능**
- 정부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소요비용 지원내용

지원 내용	세부 지원 내역	유의 사항 및 제출 서류
<b>컨설팅 (F/S 포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시장분석, 재무(경제성), 법률, 경영, 마케팅 등)</li> <li>• 사업제안서작성(RFP, Proposa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수행 시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li> <li>• 전문가 별도 위탁 시 계약서 사본 제출</li> <li>* 신청 시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 후 사업수행 착수 시 계약서 사본 제출</li> </ul>
<b>인허가 및 협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수수료</li> <li>• 전문가 자문료 및 현지출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전문가 이력서 제출</li> </ul>
<b>교육훈련 (연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채용인력 교육 (의료인, 비의료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함</li> <li>• 교육계획서 별도 첨부</li> </ul>
<b>홍보마케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중요 관계자 초청 경비 지원</li> <li>• 현지 대상 마케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현지 홍보 위주 일 것</li> <li>*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b>50%이상</b>)</li> <li>• 초청계획서 별도 첨부</li> <li>• 행사계획서 별도 첨부</li> </ul>
<b>기타 활동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용품구입비, 수수료, 도서인쇄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제반경비는 지원 사업비의 5% 범위 내 사용</li> </ul>

\* 지원 사업비 = 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 소요비용 지원내용 중 지원 가능 사업비 비목**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 지원 사업비의 30% 인정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기타경비	기타 제반경비는 지원 사업비의 5% 범위 내 사용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자문료) · 공고료 및 광고료	
	임차료	임차료	
	위탁사업비	용역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사업비의 30% 인정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외빈초청경비(여비), 회의비 등	
* 지원 사업비 신청은 [붙임2.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 할 것			

\* 지원 사업비 = 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4년 정부지원금 집행 완료시까지 연중 수시접수

□ '14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급성, 연내 사업완료의 필요성 및 사업 참여도 재고를 위해

1, 2차에 한해서 접수기간 지정·운영

- 1차 접수: 7/25(금) 18:00까지

- 2차 접수: 8/8(금) 18:00까지

□ 1, 2차 접수를 통한 지원시행 후에도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수시접수선정 예정

- 당해 연도 지원사업비 집행 완료 시 “지원사업 종료” 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khidi.or.kr / kohes.khidi.or.kr)

## □ 지원사업 수행기간

- 지원사업 신청 수시접수를 통해 선정된 **주관기관 간의 협약에 따름**
  - 협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 이내**(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
    - \* 사업 특성에 따라 개별 적용

## III.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신청 자격

-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연관기관\*을 프로젝트 총 사업 책임자로 하되, 프로젝트의 성격·규모에 따라 연관산업체 또는 유관협회와의 컨소시엄 형태(선택사항)로 신청 가능

\* 건설, 의료IT, 의료기기·장비, 제약, 금융, 컨설팅, 관련 협회 등

-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기관이 사업(프로젝트)의 총 사업 책임자일 경우에는, 신청 컨소시엄 내에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의료기관 요건>

-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단, 조산원 제외)
-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해외에서 현지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인 경우에 한함)

#### <관련 회사(연관 기관) 요건>

-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사업추진이 가능한 회사
- 금융, 건설(설계·시공·CM 등), 의료기기, IT 솔루션, 의약품, 컨설팅(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관련 협회 요건>

- 국내에서 정식 인가 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협회

### □ 신청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①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사업으로 동일한 내용 또는 신규 추진사항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 ②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③ 최근 2년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병원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

- \* 환수조치 대상기관
  - 미진한 사업결과(최종결과보고)로 인해 지원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 조치 받은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인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기관
- \* 환수조치 대상이었던 기관은 컨소시엄(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 ④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기관
- ⑤ 불성실 납세 기관(총 사업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

## □ 제출서류<sup>1)</sup>

- 제출공문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A4 세로형 좌측제본, 총 100page 이내(표지, 간지 포함))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사업계획서 (반드시 제본할것)	- 백색용지 A4사이즈/중(210mm×297mm)으로 작성 ※내용은 컬러, 흑백 제한 없음 ※제 본: 접착제 제본, 좌측편철, 양면인쇄	10부
전자파일	- 사업계획서 및 별도 제출서류 일체의 내용 수록 파일 저장명: 기관명_지역(국가)_프로젝트명	kohes@khidi.or.kr

- 서약서 1부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 이내, 원본 대조필) 1부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컨소시엄일 경우 추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사업자간 '업무제휴 협약서') 사본 1부
  - 총 사업 책임자를 명시한 대표자 선임계 1부
- ※ 붙임 서식 참조

1) 붙임 서식 1-6: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서약서 4. 공동수급협정서 5. 대표자선임계 6-1.교육계획서 6-2. 초청/행사 계획서

제출서류는 이메일(kohes@khidi.or.kr) 선 제출 후 제출서류 인쇄본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사업(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계획(내용)을 담아야 하고, 지원 사업은 그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진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50~100페이지 이내)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비용 등)을 사업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신청 계획 작성은 붙임2.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비고
사업계획 요약서		
I. 사업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li> <li>2. 사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중점 추진 방향</li> <li>2-2. 추진 목표</li> </ol> </li> <li>3. 사업 추진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그 간의 성과</li> <li>3-2. 네트워크 구성</li> </ol> </li> <li>4. 정부지원의 필요성</li> </ol>	붙임 3. 서식참조
II. 사업 추진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추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사업 추진일정</li> <li>1-2. 지원사업 추진일정</li> <li>1-3. 정량적 목표</li> <li>1-4. 정성적 목표</li> </ol> </li> <li>2. 수익예측 사업모델(안)</li> <li>3.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li> <li>4. 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지원사업 기대효과</li> </ol> </li> <li>5. 사업진행보고 및 지원사업 실시기간 성과물 관리계획</li> </ol>	
III. 사업 수행 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계획</li> <li>2. 참여인력 구성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참여인력</li> <li>2-2. 사업 책임자</li> </ol> </li> </ol>	
IV. 신청기관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현황</li> <li>2. 조직 및 인력현황</li> <li>4.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li> <li>5. 기타</li> </ol>	
V. 사업비 구성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기관 경영 및 재무상태</li> <li>2. 총 사업비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재원조달 계획</li> </ol> </li> </ol>	
VI. 지원사업비 신청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 사업비 지출계획(기초내역)</li> <li>2. 지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li> </ol>	

## IV. 지원사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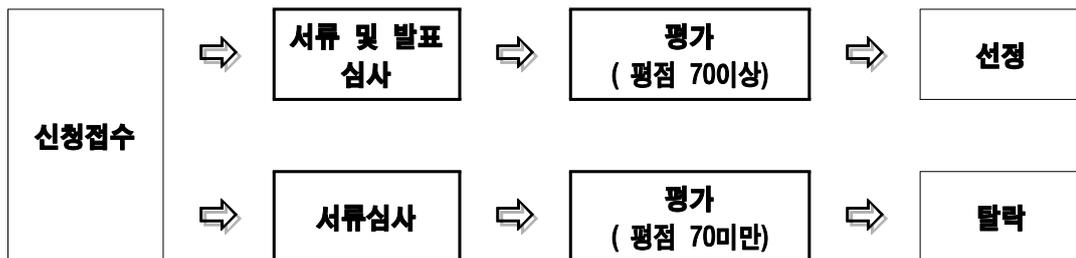
사업계획서접수 → 서류검토·심사 → 발표 평가 → 선정 → 협약체결 → 정부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실시 및 보고

### □ 선정 절차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심사(적격후보 선정) → 발표평가 → 선정 → 지원내용협의 → 협약체결

※ 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을 선정한 후, 사업내용과 예산협의(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며, 협의결과에 따라 재선정할 수 있음



※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탈락

### □ 신청서류 검토

- 서류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신청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기관은 10일 이내에 보완자료 및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되 관리기관 내 전문가 또는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신청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 □ 선정 평가

- 수시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자문·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심사·평가 진행
-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심사를 통해 적격후보를 선정하여 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
- 평가 권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사업 심사 배점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 함

###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전문가 자문단 포함)

사업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민간 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li> <li>◆ 연구기관의 경우, 선임급 이상</li> <li>◆ 기업의 경우, 관리자급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별 사무관 이상</li> <li>◆ 관련 위원회 소속 전문가</li> </ul>

## □ 선정 기준

- 점수계산 : 평가항목별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고 총 평가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동점 시 처리방침
  - 평가 중요도가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평가 항목별 중요도 순위: 1. 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2. 사업의 적합성 3. 사업수행체계 구성 4. 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가능성 5. 신청 예산의 적정성 6. 신청 기관(기업) 현황

[사업 심사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I. 사업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규모의 적정성(현지 시장의 적합성 포함)</li> <li>· 사업 추진 의지</li> <li>· 사업 목표의 타당성</li> <li>· 국내/현지 네트워크 구성 현황 수준</li> <li>* 현지 파트너 추진능력(정부주도, 국영기업, 신뢰도) 포함</li> </ul>	20점
II. 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진출에 대한 구체화 정도</li> <li>·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 구체성/적합성</li> <li>· 제시한(수익예측) 사업 모델의 진출(성공) 가능성</li> <li>· 제약요인 최소화 방안</li> <li>· 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li> </ul>	25점
III. 사업수행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인력 및 업무 구성계획</li> <li>· 전문성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li> <li>·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의 적절성(컨소시엄 해당)</li> </ul>	15점
IV. 신청 기관(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현황</li> <li>· 조직 및 인력현황</li> <li>·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li> <li>· 기타</li> </ul>	10점
V. 재정현황 및 자원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상태 및 사업지원 의지</li> <li>· 총 사업비 구성</li> <li>· 재원조달 계획의 적합성 및 프로젝트 자금 확보 가능여부</li> </ul>	15점
VI. 신청 예산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사업비 지출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적정성</li> </ul>	15점
<b>합 계</b>		<b>100점</b>

-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신청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이 종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신청되는 신청기관의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 할 수 있음

**□ 선정발표**

- 최종평가결과 발표 : 발표평가회 개최 후 7일 이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kohes.khidi.or.kr) 게재

## V. 지원사업 준수 사항

###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스캔 첨부, 원본은 발표평가 시 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14년 정부지원금 집행 완료 시** 2014년 지원사업이 종료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kohes.khidi.or.kr)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집수를 종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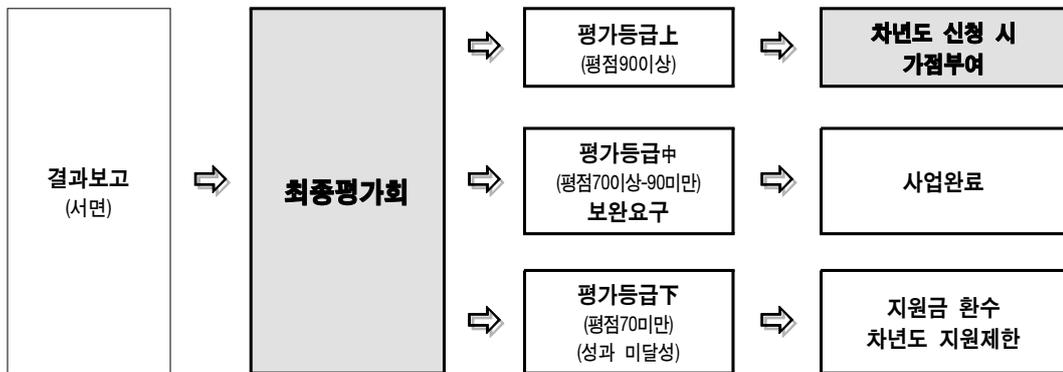
### □ 사업 관리

-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 지침 안내교육 실시
- 선정된 기관(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시 사업집행기준에 맞게 실시
  - ※ [국고보조금예산편성기준 및 회계처리원칙]의거 지원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명확한 산출근거 명시)으로 사용, 체크카드 의무사용, 현금사용 불인정
- 사업 수행 변경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요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주관기관은 중간 평가 및 결과 평가 관련 요청자료 관리기관에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등
    - ※ 필요시 현장점검, 세부 제출 자료는 사업 특성에 따라 추후 통보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아래 [프로젝트 수행기관(주관기관) 제재] 사항에 따름
- 주관기관은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가 **최종 종료(해외진출 안착 또는 수출)될 때까지** 관리기관의 **현황보고** 요청이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사업수행 평가

- 중간평가
  - 제출 받은 중간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내부 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계속”, “중단”을 결정
    - ※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 90점 이상(“상”), 90점 미만~70점 이상(“중”)은 “계속”으로 평가하며, 70점 미만(“하”)은 “중단”으로 평가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잔금(30%) 지급
- 결과 평가(지원사업 완료)



- 사업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추진실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상”, “중”, “하”로 평가됨
- 90점 이상(“상”)은 차년도 신청시 가점부여, 90점 미만~70점 이상(“중”)은 사업 완료(완수)로 평가하며, 70점 미만(“하”)은 지원금 환수(전액 또는 일부) 및 차년도 지원제한 조치를 둠

## □ 프로젝트 수행기관(주관기관) 제재

○ 프로젝트 신청 전,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제재가 있음

1.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2.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3.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4. 프로젝트 수행기관(주관기관)이 협약 후 1개월 이상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수행결과 평가가 불성실수행으로 인한 평가등급 “하”를 받은 경우
10. 주관기관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임이 협약체결 후 밝혀진 경우
11. 주관기관의 주요정보(대표이사, 사업종목, 정관 등) 변경에 대해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12. 사업 책임자 교체로 인해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관리기관이 협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의처

-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KOHES, [kohes.khidi.or.kr](http://kohes.khidi.or.kr))  
게시판 Q&A 활용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  
구경미 043-713-8497, 정치중 043-713-8868 ([kohes@khidi.or.kr](mailto:kohes@khidi.or.kr))

【붙임 2】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국고보조금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 총 지원 사업비 = 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①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 인력 고용 보수	총 지원 사업비의 30%까지 인정
	②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기타경비	기타 제반경비는 총 지원 사업비의 5% 범위 내 사용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자문료) · 공고료 및 광고료	
	④ 임차료	임차료	
	⑤ 위탁사업비	용역비	
	⑥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⑦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⑧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업무추진비	⑨ 사업추진비	외빈초청경비, 회의식사비 등	

# 1) 인건비 : 총 지원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의 30%까지 인정

## ① 전문계약직 보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부담금																
<b>【사용용도】</b> 1. 전문계약직에 대한 보수 * 1개월 이상 고용에 한함(주 5일, 1일 8시간 근무)  <b>【계상기준】</b> 1.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인력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2. 아래 급여기준에 따른 실제 참여 개월 수에 따라 계상 * 참고) 학술용역인건비 단가 (참여율 50% 적용, 단위: 1개월)	○	○																
<table border="1"> <tr> <td>책임연구원</td> <td>연구원</td> </tr> <tr> <td>3,018,785</td> <td>2,314,762</td> </tr> </table>	책임연구원	연구원	3,018,785	2,314,762														
책임연구원	연구원																	
3,018,785	2,314,762																	
* 지원 사업비의 30%까지 인정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b>3. 직급별 적용기준 아래 참조</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책임연구원</th> <th>연구원</th> </tr> </thead> <tbody> <tr> <td>-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td> <td>-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td> </tr> <tr> <td>-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td> <td>-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td> </tr> <tr> <td>-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td> <td>-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td> </tr> <tr> <td>-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td> <td>-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td> </tr> <tr> <td>- 조교수 이상</td> <td>-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td> </tr> <tr> <td>- 책임연구원</td> <td>-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td> </tr> <tr> <td>-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td> <td>- 연구원</td> </tr> </tbody> </table>			책임연구원	연구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조교수 이상	-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조교수 이상	-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 연구원																	

## ② 일용임금(단순인건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부담금
<b>【사용용도】</b> 3개월 내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b>【계상기준】</b> 1. 지급단가는 1일 1인 48,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당 6,000원(최저임금 5,580원), 1인당 월 60시간(1일 8시간) 초과 금지	× 사용안됨	○

## 2) 운영비

### ③ 일반수용비

#### · 사무용품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고급용품은 인정하지 않음.	○	○

#### · 인쇄비 및 유인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옵셋 인쇄 지양)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포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

#### · 간행물 등 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본 사업관련 정보(전문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신문, 잡지, 관보, 도서 *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1.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2.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3.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4.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 5.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6. 이행보증보험료 7. 위탁정산수수료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사용용도】 2번, 6번, 7번만 인정	○

**[참고] 위탁정산수수료 현황**

지원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 지원 사업비 이월사업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업(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사업 : 가산금 없음  
 ※ 중간정산 및 보고가 추가되는 경우 상기 수수료의 40% 가산

\* 지원사업비 규모(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에 따라 위탁정산수수료 적용

· 기타 경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현수막, 부스, 브로슈어, 팸플릿, 리플릿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념품, 선물은 인정하지 않음.	○	○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자문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1.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번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1회성 또는 1개월 이내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2. 속기·원고측량, 번역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3. 사업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4.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	○	○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자문료 지급 기준] 1건당 200,000원 한도**

- 신청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원고료 사용한도액] 15,000원/장**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15,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책자발간 금액 한도 : 1권당 50만원 한도

- 강의 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 일반 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기 준
<b>A4용지 1매 기준 15,000원</b>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통역료, 번역료 요율]

항 목	기 준 및 사용한도액				
<b>통역료</b>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b>번역료</b>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www.hufscit.com](http://www.hufscit.com) 「요율표」 참조

## · 공고료 및 광고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x 사용안됨	○

## ④ 임차료

내역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임차료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x	○
일시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회의장 임차 시 회의비와 함께 발급된 계산서의 경우, 임차료 또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선택적용 가능	○	○
리스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x	○
창고이용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단기간 창고이용료	x	○
차량임차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료(국외출장)	○	○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2. 차량임차료는 국외출장 시에만 인정		

## ⑤ 위탁사업비

### · 용역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1.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b>【계상기준】</b> 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사업 수행인력과 본 사업 참여인력의 중복은 불인정(위탁기관 소속 직원은 참여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음) * 위탁용역사업의 신규 및 변경은 승인사항	○	○

## ⑥ 기타 운영비

### · 교육 강사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1.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 강사료 2.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강사료에는 원고료 포함, 중복 집행 인정하지 않음. * 강사 교통비는 인정하지 않음.	○	○

## [강사료 지급 기준]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특별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장·차관(급)</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2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li> </ul>	
1급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li> <li>-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18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li> </ul>	
2급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li> <li>-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10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70,000원</li> </ul>	
3급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li> <li>-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li> <li>-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7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40,000원</li> </ul>	
보조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시간 50,000원</li> <li>- 초과 매시간당 30,000원</li> </ul>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이하 27.5만원</li> <li>- 6~10인 40만원</li> <li>- 11인이상 55만원</li> </ul>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인이하 35만원</li> <li>- 6~10인 50만원</li> <li>- 11인이상 70만원</li> </ul>	
<p>※ 수행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p> <p>※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p> <p>※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p> <p>※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p> <p>※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p> <p>※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p>			

## 2) 여비 : 총 지원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의 30%까지 인정

### ⑦ 국내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b>【사용용도】</b> 1. 간접보조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경비  <b>【계상기준】</b> 1. 참여인력만 해당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 소요경비 3.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참조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가용 운전 시 유류비는 거리 및 유가정보 기준 산정 (유가정보시스템 지역별 가격기준)	○	○

[별표 2] <개정 2013.12.11>

###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실비 7,000원/1식 *1일 21,000원 한도

## ⑧ 국외여비

- 국외 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 부담금																																
<p><b>【사용용도】</b></p> <p>1. 정부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업무(조사, 확인, 점검, 협력체결 등)</li> <li>- 사업 관련 국제회의 등</li> </ul> <p><b>【계상기준】</b></p> <p>1. 참여인력만 해당</p> <p>2.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은 인정하지 않음.</p> <p>3.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 소요경비 계상(정액은 인정하지 않음)</p> <p>*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2013.12월) 일반직원(6급 이하)으로 국가별 등급에 따라 숙박비와 식비는 아래의 비용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실비 정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등급</th> <th colspan="2">체재비</th> <th rowspan="2">합계(\$)</th> <th rowspan="2">원화계 (1,200원)</th> </tr> <tr> <th>숙박비(\$)</th> <th>식비(\$)</th> </tr> </thead> <tbody> <tr> <td>6급 이하</td> <td>가</td> <td>155</td> <td>67</td> <td>222</td> <td>266,400</td> </tr> <tr> <td>6급 이하</td> <td>나</td> <td>123</td> <td>49</td> <td>172</td> <td>206,400</td> </tr> <tr> <td>6급 이하</td> <td>다</td> <td>77</td> <td>37</td> <td>114</td> <td>136,800</td> </tr> <tr> <td>6급 이하</td> <td>라</td> <td>71</td> <td>30</td> <td>101</td> <td>121,200</td> </tr> </tbody> </table> <p>* 정부지원금은 중요 인력 3명 이내 사용 가능</p> <p>* 아래 국외 여비 지급표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lt;국가별 등급&gt;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표</p>	구분	등급	체재비		합계(\$)	원화계 (1,200원)	숙박비(\$)	식비(\$)	6급 이하	가	155	67	222	266,400	6급 이하	나	123	49	172	206,400	6급 이하	다	77	37	114	136,800	6급 이하	라	71	30	101	121,200	○	○ * 자부담 우선편성
구분			등급	체재비			합계(\$)	원화계 (1,200원)																										
	숙박비(\$)	식비(\$)																																
6급 이하	가	155	67	222	266,400																													
6급 이하	나	123	49	172	206,400																													
6급 이하	다	77	37	114	136,800																													
6급 이하	라	71	30	101	121,200																													

### 국외 여비 지급표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등급	숙박비	식비
가	실비(상한액: 155)	67
나	실비(상한액: 123)	49
다	실비(상한액: 77)	37
라	실비(상한액: 71)	30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리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3) 업무추진비

#### ⑨ 사업추진비

- **외빈초청경비, 회의식사비 등**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구 분	
	정부지원금 (간접보조사업비)	자기부담금
<p><b>【사용용도】</b></p> <p>1.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참여인력 간의 회의는 인정하지 않음.</p> <p>2.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 외빈초청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등</p> <p><b>【계상기준】</b></p> <p>1. 외빈초청경비 ·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홍보 위주 일 것 ·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50%이상) * 항공료, 숙박비 실비정산(상기 국외 여비 지급표 적용) * 해외초청 주빈에 한하여 6만원, 수행자 4만원 이내 식사비 인정(공무원 접대비 기준)</p> <p>2. 회의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계상 * 초과 금액은 지원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p>	○	○

## 【붙임 3】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서식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서식 3】 요약서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5】 대표자선임계

【서식 6-1】 교육 계획서

【서식 6-2】 초청/행사 계획서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요망)

###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사업(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계획(내용)을 담아야 하고, 지원 사업은 그 중 일부에 해당되므로,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진출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50~100페이지 이내)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비용 등)을 사업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신청 계획 작성은 붙임2.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글꼴 / 크기 / 줄 간격 등

- 제목 :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200%), 속성(진하게)
- 본문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180%)
- 기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 ♣ 보고서 작성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서식 중 네모상자안의 작성설명 숙지 후 작성(제출 시 삭제요망) 
-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최대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
- 인용한 경우 출처(참고문헌) 자세히 명시(각주처리, 표나 그림의 경우 그 하단에 명시)
- 작성하는 사항은 서식에 따라 **'hwp' 파일**로 작성하여 **파일은 메일 발송, 인쇄본 10부 우편** 제출

## ♣ 인쇄 및 제본 요령

## ○ 인쇄 및 제본

- A4용지 양면 인쇄
- 제본 시 좌철을 하되 스테이플러나 스프링 제본 사용 금지
- 제안서: A4 세로형 좌측제본, 총 50~100page 이내(표지, 간지 포함)
- 제안요약서: A4 세로형 5page 이내 작성

제출서류는 이메일(kohes@khidi.or.kr) 선 제출 후 제출서류 인쇄본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① 신청 기관	기관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매출액 (최근연도)	억원(20년) *연도기재		
	종업원 수							
	주소							
	기관정보 *해당사항: ○ 표시	의료기관			의료기가지비	의료IT	의료설비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제약		컨설팅	투자	설계·시공	협회	기타		
② 컨소시엄 참여사								
③ 사업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진출국가			
	진출품목				진출형태 (투자형태)			
	국내자본 해외투자				국외 자본투자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 . . 년 . . . 개월)		지원 사업 실시 기간	2014. . . . ~ 2014. . . . ( . . . 개월)			
	총 사업비	억원		신청금액 (지원 사업비)	총 계	정부 지원금	자기부담금 (30% 이상 의무)	
					천원	천원	천원	
	사업 책임자	직급			연락처	Tel. 핸드폰 E-mail		
	담당부서	직급				연락처	Tel. 핸드폰 E-mail	
실무 담당자								
<p>2014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4년 . . . 월 . . .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 . . . 직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b></p>								
※ 첨부서류 1. 공고에 붙인 서류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설명

<b>② 컨소시엄 참여사</b>	해당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참여사 별 기재. 없으면 공란 <i>*기업·기관명/ 분야</i>
-------------------	--

③ 사업(프로젝트)개요: 설명 및 작성예시

<b>프로젝트명</b>	진행 중인 사업 계획(추진)명		<b>진출국가</b>	몽골, 울란바토르		
<b>진출품목</b>	의료서비스(진료과목) <i>감진센터, 종합병원, 정형외과 등</i> 의료IT, 기타 서비스( <i>의료경영, 컨설팅 등</i> )		<b>진출형태</b> (투자형태)	아래 참조 <b>합작</b>		
<b>국내자본 해외투자</b>	00병원: 15억 00기업: 50억 추가 투자자 모집 중		<b>국외 자본투자</b>	현지대출 또는 파트너의 자본 투자 <i>SC 그룹: 50억</i> 투자자 모집 예정		
<b>총 사업기간</b>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해 처음 기획에서 진출하여 개설·운영되기까지의 기간 <b>2011. 3. ~ 2014. 11.</b> <b>(3년 8개월)</b>	<b>지원 사업 실시 기간</b>	본 지원 사업에 <b>신청한 지원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2014년 종료되어야 함</b> (즉,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지원 사업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간) <b>2014. 8. 25 ~ 2014. 12. 25.</b> <b>(4개월)</b>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일정조정 가능			
<b>총 사업비</b>	총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총 비용 <i>156억원</i>	<b>신청금액</b> (지원 사업비)	<b>총 계</b>	<b>정부 지원금</b>	<b>자기부담금</b> (30% 이상 의무)	
			천원	천원	천원	
<b>사업 책임자</b>	<i>이순신</i>	<b>직급</b>	<i>원장 대표이사</i>	<b>연락처</b>	Tel. 000 0000 0000 핸드폰 010 0000 0000 E-mail k***@k**i.or.kr	
<b>실무 담당자</b>	<i>홍길동</i>	<b>직급</b>	<i>부장</i>	<b>연락처</b>	Tel. 000 0000 0000 핸드폰 010 0000 0000 E-mail h***@k**i.or.kr	

• 진출형태(투자형태)

진출형태(투자형태): 진출 또는 진출 예정으로 아래사항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추가 설명 필요시 옆에 기재

<b>단 독</b>	<정의> 외국인 투자자가 100% 자본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방식
<b>합 작</b>	<정의>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을 공동 투자하여 공동 경영하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10% 이상 자본투자) * 진출 국가에 있는 병원 또는 현지 파트너와 공동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병원 위탁운영의 형태가 많음. 주로 진출국측은 건물 제공, 한국은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협력 식의 합작형태가 많음. <b>그러나</b> , 자본투자 없는 의료기술협력은 전략적 제휴 형태에 해당
<b>전략적 제휴</b> (Strategic alliance)	<정의> 해외진출주체와 현지 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설립 없이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방식(자본투자 없거나 10% 미만 자본투자) * 전략적 제휴의 경우 협력분야 명시 <b>작성 예시) 전략적 제휴(의료기술전수-정형외과)</b>
<b>프랜차이징</b> (Franchising)	<정의> 해외진출주체가 현지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현지 사업자에게 서비스표 사용권, 의료시스템 운영노하우(교육, 마케팅 등) 등을 제공하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가맹금, 서비스표 사용료 등을 취득하는 방식
<b>연락사무소</b>	<의미> 직접투자를 위한 진출 추진(법인설립 전) 단계에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기는 형태 * 연락사무소는 실질적 진출 형태는 아니지만 있으면 기재하고, 향후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 인지 명시할 것 <b>작성예시) 연락사무소(2014. 10월)-단독(독립병원 설립예정 2015. 11월)</b>

**【서식 2】**

(표지)

**2014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프로젝트명 기재 -  
사업계획서**

**2014.**

**수행기관:**

**직인**

**보건산업진흥원**

# - 목 차 -

사업계획 요약서 .....	00
<b>I. 사업 개요 .....</b>	<b>00</b>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00
2. 사업 목표 .....	00
2-1. 중점 추진 방향 .....	00
2-2. 추진 목표 .....	00
3. 사업 추진 현황 .....	00
3-1. 그 간의 성과 .....	00
3-2. 네트워크 구성 .....	00
4. 정부지원의 필요성 .....	00
<b>II. 사업 추진계획 .....</b>	<b>00</b>
1. 사업 추진 내용 .....	00
1-1. 사업 추진일정 .....	00
1-2. 지원사업 추진일정 .....	00
1-3. 정량적 목표 .....	00
1-4. 정성적 목표 .....	00
2. 수익예측 사업모델(안) .....	00
3.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	00
4. 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 .....	00
4-1. 지원사업 기대효과 .....	00
5. 사업진행보고 및 지원사업 실시기간 성과물 관리계획 .....	00
<b>III. 사업수행체계 .....</b>	<b>00</b>
1.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계획 .....	00
2. 참여인력 구성계획 .....	00
2-1. 참여인력 .....	00
2-2. 사업 책임자 .....	00

IV. 신청기관 현황 ..... ○○

- 1. 일반현황 ..... ○○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 3.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 ..... ○○
- 4. 기타 ..... ○○

V. 사업비 구성계획 ..... ○○

- 1. 신청기관 경영 및 재무상태 ..... ○○
- 2. 총 사업비 구성 ..... ○○
- 3. 재원조달 계획 ..... ○○

VI. 지원사업비 신청계획 ..... ○○

- 1. 지원 사업비 지출계획(기초내역) ..... ○○
- 2. 지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

※ 증빙자료 스캔하여 별도 첨부(발표 평가 시 원본 제출)

# 사업(프로젝트) 추진 요약서

▶ 본 간지는 색지를 사용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 요약서

<b>① 총 투입인원</b>	신청기관		명		
	컨소시엄 참여사		명		
	위탁기관(용역)		명		
<b>② 지원내용 및 요청금액</b>	<input type="checkbox"/> 컨설팅(F/S 포함)	원	총 원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및 협상	원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연수)	원			
	<input type="checkbox"/> 홍보마케팅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반 경비	원			
<b>③ 사업 개요</b>	<b>프로젝트명</b>		<b>진출국가</b>		
	<b>진출품목</b>		<b>진출형태 (투자형태)</b>		
	<b>국내자본 해외투자</b>		<b>국외 자본투자</b>		
	<b>총 사업기간</b>	20 . . . ~ 20 . . . ( . 년 . 개월)	<b>지원 사업 실시 기간</b>	2014. . . ~ 20 . . . ( . 개월)	
	<b>총 사업비</b>	억원	<b>신청금액 (지원 사업비)</b>	<b>총 계</b>	<b>정부 지원금</b>
				천원	천원
	<b>자기부담금 (30% 이상 의무)</b>			천원	
	<b>사업 책임자</b>	<b>직급</b>		<b>연락처</b>	Tel. 핸드폰 E-mail
<b>담당부서</b>	<b>직급</b>		<b>연락처</b>	Tel. 핸드폰 E-mail	
<b>실무 담당자</b>					

사업내용 요약
◦ 사업 목표
◦ 사업 추진 내용
◦ 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
◦ 지원사업 기대 효과

※ 필요시 칸을 늘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최대 2장)

▶ **작성설명**

<b>① 총 투입인원</b>	신청기관	기관명	프로젝트 총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하는 총 인원수
	컨소시엄 참여사	참여사 모두 작성	참여기관 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수의 합계
	위탁기관(용역)	위탁 있으면 기관명	참여인력 수

**③ 사업개요- 사업신청서 작성설명 참조**

- **사업목표**
  - 추진목표: 본 사업(프로젝트)을 위한 세부 성과 달성 목표 작성
    - \* 지원 사업 실시 기간 중 이루어질 목표는 작성 옆에 **(지원사업)** 표시 할 것
    - \* *목표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성과물(결과)*
- **사업 추진 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요약
- **기대효과**
  - 사업(프로젝트)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및 지원사업을 통해 얻게 될 결과물 및 활용 효과 작성

# 사업(프로젝트) 계획서

▶ 본 간지는 색지를 사용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I. 사업개요

## 1.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프로젝트명			진출국가			
진출품목			진출형태 (투자형태)			
국내자본 해외투자			국외 자본투자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 년 . 개월)	지원 사업 실시 기간	2014. . . . ~ 2014.. . . . ( . 개월)			
총 사업비	억원	신청금액 (지원 사업비)	총 계	정부 지원금	자기부담금 (30% 이상 의무)	
			천원	천원	천원	

그림을 이용하여 사업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등을 표기

- 
- 
- 
- 

### ▶ 작성설명

- 표는 사업신청서 작성설명 참조
- 그림을 이용하여 사업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등을 표기
- 사업주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타깃국가의 시장이나 의료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
  - \* 진출품목이 타깃국가에서의 시장성 및 성장성, 진입가능성, 경쟁우위 등을 제시(지역 또는 고객 기준)
- 해당 프로젝트가 확실한 기회인 이유, 사업주체의 경쟁우위 제시

## 2. 사업 목표

○

-

○

-

### ▶ 작성설명

- 추진목표: 본 사업(프로젝트)을 위한 세부 성과 달성 목표 작성
  - \* 지원 사업 실시 기간 중 이루어질 목표는 작성 옆에 **(지원사업)** 표시 할 것
  - \* 목표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성과물(결과)

### ※ 체크포인트

- 목표가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한가?

## 3. 사업 추진 현황

### 3-1. 그 간의 성과

○

-

○

-

### 3-2. 네트워크 구성 현황

○

-

○

-

### ▶ 작성설명

- 3-1.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프로젝트)의 추진 현황(달성된 목표)
- 3-2. 수행할 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자(기관/기업)와의 기존 네트워크 현황이나 앞으로의 구성 방안 기술

#### 4. 정부 지원의 필요성

○

-

○

-

## II. 사업 추진 계획

### 1. 사업 추진 내용

#### 1-1.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연도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1-2. 지원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월																
	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설명

◦ 사업 추진 순서(시기별)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 작성, 해당 칸(일정)에 ◎ 표시

### 1-3. 정량적 목표

구분	내용			
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예산				
수행 분담비율	신청기관	참여기관	기타	계
				100%
수행이유				

-

구분	내용			
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예산				
수행 분담비율	신청기관	참여기관	기타	계
				100%
수행이유				

-

### 1-4. 정성적 목표

구분	내용			
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예산				
수행 분담비율	신청기관	참여기관	기타	계
				100%
수행이유				

-

□

구분	내용			
수행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예산				
수행 분담비율	신청기관	참여기관	기타	계
				100%
수행이유				

○

▶ **작성설명**

- **사업 추진 시기(순서(단계)적으로 작성)**에 따라 목표를 작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 \*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전략)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세부 내용별로 수행방법을 기술, 신청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내용(역할) 등도 상세히 기술

□ **성과 달성 목표작성(지원사업)**

\*지원사업을 통하거나 지원사업 내용이 일부 포함될 경우 위처럼 옆에 **(지원사업)** 진하게 표시

구분	내용			
수행기간	소요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수행예산	소요예산			
수행 분담비율	신청기관	참여기관	기타	계
				100%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주관자체 수행과 참여기관, 전문가 활용 등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기술				
수행이유				

○ 세부내용 구체적 작성

※ **체크포인트**

-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최종결과물 산출(기대 및 파급효과)을 위해 적합한 수행방법을 수립하였는가?
- 신청기관과 참여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 및 활성화가 가능한가?
- 위 내용을 수행하였을 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2. 수익예측 사업모델(안)

○

-

### ▶ 작성설명

◦ 계획하고 있는 사업모델 제시(도식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식화 요망)

#### ※ 체크포인트

• 사업추진 계획 대비 제시한(예측하는) 사업 모델이 진출(성공) 가능한가?

## 3.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

-

○

-

### ▶ 작성설명

◦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및 제약요인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 체크포인트

•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는가?

•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 4. 사업기대 및 파급효과

○

-

○

-

### 4-1. 지원사업 기대효과

○

-

○

-

▶ **작성설명**

- 사업(프로젝트)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작성
    - 해외진출을 통해 파급되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기술  
(국내 기자재/인력 활용 여부, 국내 연관기업과 동반진출 가능성 등)
- 4-1. 지원사업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해 얻게 될 결과물 및 활용 효과 제시

## 5. 사업진행보고 및 지원사업 실시기간 내 성과물 관리계획

○

-

○

-

▶ **작성설명**

- 세부사업별 내부 관리 계획 기술 (보조 설명자료 Time Schedule 첨부)
  - ※ 외부용역사업 내부 관리 계획 포함
- 지원사업 실시 기간 내 성과물 종류 및 주요 내용 기술

---

### III. 사업 수행 체계

---

#### 1. 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계획

##### ○ 전담조직 구성 체계

▶ 작성설명

- 사업수행 주체 및 체계 등(신청기관, 참여기관, 위탁 등 모두 포함) 상호 연관성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각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신청기관	• •
	• •
	• •
	•
	• •

○ 각 기관 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책임자		직급		연락처	Tel. 핸드폰 E-mail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					
No.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 책임자

▶ 작성설명: 참여기관(컨소시엄 참여사) 및 위탁기관 정보 작성 (없으면 삭제)  
 ◦ 신청기관을 제외한 참여기관/기업 정보 기입, 참여기관 수에 맞춰 상기 표 추가하여 작성

## 2. 참여인력 구성계획

### 2-1. 참여인력

No.	소속기관	성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담당 업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전공	학교			

▶ **작성설명**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업책임자 포함)에 대해 입력하여야 함.  
\* 위탁기관(용역) 소속직원은 참여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음
- 전공 및 학위는 최종학위를 말함
- 담당업무는 상세히 기재
- 참여율은 소속기관에서의 본 사업(프로젝트)이 차지하는 비중

**2-2. 사업 책임자**

○ 인적사항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소속)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급		휴대전화	- -
주 소				E-mail	

○ 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학교	전공명	
.	.			
.	.			
.	.			
.	.			

※ 학위 : 학사, 석사, 박사, 박사 후 연수,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주요업무
부터	까지			
.	.			
.	.			
.	.			
.	.			
.	.			

○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

번호	기획사업명	수행기관	지원기관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부터-까지)	역할*	구분*
1							
2							
3							
4							
5							
6							
7							

- 상기 사업들의 성과(3가지로 요약)

- ①
- ②
- ③

▶ 작성설명

- 본 사업과 유사성격의 사업 수행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역할 : '책임자', '참여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재
- \*구분 : '수행 중', '수행완료'로 구분하여 기재



## 2. 조직 및 인력현황

### ○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학력	기간	학력	전공	
	대학교			
	대학원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최종직위	전화번호
기타				

### ○ 인력현황

구분											계
인원(명)											

#### ▶ 작성설명

- 본 사업과 유사성격의 사업 수행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인원현황 작성: 구분에 직종 기재
- \* 의료기관 예시

구분	의사	교수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의공직	운영 기능직	기타	계
인원 (명)											

### 3.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실적	협력 상대국 (기관)	책임자

○

▶ **작성설명**

-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사업실적은 해외환자유치수, MOU체결, 해외진출, 해외인력 교류 등 구체적인 결과물 기재
- 증빙서류 첨부 : 수행실적 증명서(관련기관 증명) 또는 MOU 등 관련 문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4. 기타

○

-

○

-

▶ **작성설명**

- ※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개 자료 등

## V. 사업비 구성계획

### 1. 신청기관 경영 및 재무상태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종업원수					
기타					

### 2.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구성

구분		총 사업비	
		금액(원)	비중(%)
신청기관	현금	원	
	현물	원	
참여기관 또는 투자자	현금	원	
	현물	원	
정부지원금		원	
합계		원	

▶ **작성설명**

- 사업(프로젝트)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 작성
- 필요시, 참여기관(컨소시엄) 또는 투자자 수에 맞춰 추가 작성

### 3. 재원조달 계획

○

-

○

-

## VI. 지원사업비 신청계획

### 1. 지원 사업비 지출 계획

○ 기초내역

(단위 : 원, VAT 포함)

비목· 구분· 세목	예산액		합 계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1. 인건비	① 전문계약직 보수		
	② 일용임금		
2. 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④ 임차료		
	⑤ 위탁사업비		
	⑥ 기타 운영비		
3. 여비	⑦ 국내여비		
	⑧ 국외업무여비		
4. 업무추진비	⑨ 사업 추진비	회의비	
		여비	
합 계			

## 2. 지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지원내용	산출근거		금액		
	세목	산출내역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합계

\* 지원내용: 컨설팅, 인허가 및 협상, 교육훈련(연수), 홍보마케팅, 기타 활동비

\* 세 목: ① 전문계약직 보수 ② 일용임금 ③ 일반수용비 ④ 임차료 ⑤ 위탁사업비 ⑥ 기타 운영비  
⑦ 국내여비 ⑧ 국외업무여비 ⑨ 사업추진비

#### ▶ 작성설명: [작성예시]

지원내용	산출근거		금액		
	세목	산출내역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계
컨설팅: 00조사용역	위탁사업비	용역계약서* (별첨으로 첨부)	원	원	원
인허가 및 협상 -00인허가 -중국투자자 협상	일반수용비	수수료			
	국외업무여비	항공료, 숙박비			
	사업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 00 프로그램참가	기타 운영비	강사료			
홍보마케팅 00 위한 해외 00 초청 및 00 개최 *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 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50%이상)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인쇄비		(50%이상 사용 원칙) 원	
	사업추진비	외빈초청 (항공료, 숙박비) 회의비			

**[서식 3]**

## 서 약 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4년    월    월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_\_\_\_\_와 \_\_\_\_\_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2. 계약금액 : 지원사업 총금액 (정부지원금: ₩00,000,000, 자기부담금: ₩00,000,000)
3. 발주자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표기관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기관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대표기관 대표자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_\_\_\_\_ 회사(대표자: \_\_\_\_\_ )
2. \_\_\_\_\_ 회사(대표자: \_\_\_\_\_ )
3. \_\_\_\_\_ 회사(대표자: \_\_\_\_\_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_\_\_\_\_ 대표기관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_\_\_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2.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대표자 (인)

**[서식 5]**

## 대표자 선임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회사)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000(기관명)의 대표 000를 공동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참여자 명단>**

소속 및 성 명	본 사업에서의 역할	날 인
	총 사업 책임자	
	00	
	00	
	00	
	00	

2012 년            월            일

**【서식 6-1】**

2014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교육 계획서 (요약)**

▶ 작성설명 : 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하여 교육 지원 함

신청기관			
교육기간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교육장소	
소요예산	원		
교육과정명			
신청 배경 (필요성)			
교육목표			
주요 교육내용			
기대효과			

## 교육 계획서

### 1. 교육 추진 배경(필요성)

○

-

○

-

### 2. 교육과정 비전 및 목표

○

-

○

-

### 3. 교육대상자 자격 및 대상

#### 3-1. 교육생 자격 및 선정기준

자격

○

-

선정기준

○

-

#### 3-2. 교육대상자

No.	성명	종사분야 /직급	전 공 및 학 위		주 교육 내용	담당업무	업무 시작 년 월
			전공	학교			

▶ **작성설명** : 교육대상자를 종사분야별로 분류하여 기술

### 3-3. 교육인원 및 기간

- 교육인원 :       명
- 교육기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개월)

### 3-4. 주 교육장소 및 소재지

- 

## 4. 교육프로그램

### 4-1. 중점 교육내용

- 

-

- 

-

▶ **작성설명**: 주요 교육내용을 기술하되 커리큘럼 편성방향 및 교육주제 등을 명기

< 총 교육시간 >

계	이 론		실 습	
	일반	워크숍	실습	현장학습
일( 시간)				

▶ 작성설명

- 총 교육시간 : 실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00시간 기준(00시간 이상)

4-2. 교육과정 특성화방안

○

-

○

-

▶ 작성설명

- 교육과정 발전 및 차별화를 위한 특성화 방안을 기술

4-3. 교육체계

○

-

○

-

▶ 작성설명

- 교육운영 체계도 기술

#### 4.4. 과목설정 및 시간배정

##### ○ 이론과목

시 간	교과목 및 주요 교육내용	강사		강의장소
		자체	외래	
(총 00시간)				

##### ○ 실습 및 현장교육 과목

시 간	교과목 및 주요 교육내용	강사		실습장소 (현장교육장소)
		자체	외래	
(총 00시간)				

##### ▶ 작성설명

- 참여식 교육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분임토의 진행 가능
- 일반적 이론보다는 과정에 특화된 전문적 이론교육을 우선 실시
- 강사는 구체적 이름을 명시하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예정강사의 분야, 소속기관 등을 표시
- 현장교육 실시계획 및 실습장소 등을 기술

#### 4.5. 교육일정표(커리큘럼)

주차	교과목 및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교육장소
		이론	실습	워크샵	현장교육	자체	외래	
1일차								
2일차								
⋮								
총계								

### 5. 교육운영 관리

- 교육참가자 출결관리  
-
- 교육참가자 이수관리 기준  
-
- 논문 또는 자격시험 유무 및 자격 기준  
-

### 6.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교육 운영 실적(최근 3년간)

연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인원	교육대상자	비고
		~ ( 시간)	명		
		~ ( 시간)	명		

※ '11~'13년 교육과정으로 관련증빙서(교육결과보고서, 강의교재 등)은 발표 평가(적격후보 선정) 시 제출

### 7. 강사의 학력 및 경력 현황

이론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작성설명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며, 경력은 최근 주요경력 2개 정도를 기술
- 비고란에는 자체강사, 외래강사로 구분하여 기재

현장실습교육 강사

교과목명	강사명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경 력	비고

▶ 작성설명

- 학력, 경력, 비고란 기재는 이론교육과 같음

교원 확보 : 전담교수 및 전담진행요원

구 분	성 명	학 력	경력	역할 (담당업무)	연락처	비 고
과 정 장						
전담교수						
...						
...						
계						
진행요원						
...						
...						
계						

▶ 작성설명

- 학력, 경력 기재는 전항과 같으며,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될 인원만 기재
- 비고란에는 교육진행수당 지급 유무를 기재

8. 교육 성과평가계획

- 
-

## 9. 교육비 산정

### 9-1. 총교육비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천원)

교육대상자 성명	소속(직책)	교육시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기타 (교육생 자기부담금 등)	집행 예정총액
	○○					
.....						
<b>합 계</b>						

### 9-2. 총 교육비 산출내역

구 분. 비 목 · 세 목		예 산 액		합 계
		정 부 지 원 금	자 기 부 담 금	
1. 인건비	① 전문계약직 보수			
	② 일용임금			
2. 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④ 임차료			
	⑤ 위탁사업비			
	⑥ 기타 운영비			
3. 여비	⑦ 국내여비			
	⑧ 국외업무여비			
4. 업무추진비	⑨ 사업 추진비	회의비		
		여비		
<b>합 계</b>				

**【서식 6-2】**

2014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초 청 / 행사 계 획 서**

신청기관			
실시기간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장 소	
소요예산	원		
행사명			
신청 배경 (필요성)			
초청자			
참가 대상 및 예상인원			
주요내용			
기대효과			

▶ **작성설명**

-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현지홍보 위주일 것

**기대효과**

예측되는 효과(\*가능한 구체적-정량적 지표 제시)으로 작성

## 1. 행사(초청)비 산정

### ○ 총 비용 산출내역

구 분 · 비 목 · 세 목		예 산 액		합 계
		정 부 지 원 금	자 기 부 담 금	
1. 인건비	① 전문계약직 보수			
	② 일용임금			
2. 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④ 임차료			
	⑤ 위탁사업비			
	⑥ 기타 운영비			
3. 여비	⑦ 국내여비			
	⑧ 국외업무여비			
4. 업무추진비	⑨ 사업추진비	회의비		
		여비		
합 계				

▶ 작성설명

※ 홍보마케팅 경비는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50%이상)

■ 발표 8 ■

2013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례발표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그룹

# 『병원수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차병원 사례 발표

2014. 7. 16

의료재단 성광의료재단(차병원 그룹)

## CHA's VISION

Asia-Pacific지역에 "Pre-care 부터 Post-care" 까지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



### ▶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국가

- 합자 형태로 진출
- VIP를 타겟으로한

### ▶ 한국 ★

- HQ /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CHAUM (Flagship Model)
- CHA그룹의 글로벌 care 서비스의 게이트웨이

### ▶ VIP환자 송출

- Needs별로 전문 병원으로 송출
- 재활치료, 특정질환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 중국 현지 파트너

중국 보험 그룹 파트너와 차병원그룹 상호간의 사업 관심사가 맞아 떨어지며, 차병원그룹은 보험그룹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지역 은행, 의료 관련 분야 투자 진행 자산규모의 15% 수준까지 투자 규모 책정 중</li> <li>보험상품 + 건강검진 연관 VIP 상품 전략 추진</li> <li>프로젝트 책임자 및 최고경영진의 의료사업에 대한 의지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태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중국 시장 진출 추진중</li> <li>중국 내 병원, 건설사 등 다수의 파트너 모색 중</li> </ul>
사업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gh-end 시장을 타겟으로, VIP 멤버십 컨셉을 구축하고자 함</li> <li>줄기세포 치료 가능한 업체</li> <li>보수적인 병원보다는 의사결정이 빠른 형태의 파트너 선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음, 세계최고 수준의 High-end Life Center 운영 및 성공적인 멤버십 제도 정착</li> <li>다양한 줄기세포 파이프라인 상용화를 가속화 전략</li> <li>미국 병원 및 의과대학, 벤처 등을 운영하는 기업</li> </ul>



## 중국 현지 파트너의 강점

강력한 병원 마케팅 전략 실행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조건을 갖춘

실행 가능한 병원 마케팅 전략	중국 최대의 민간 Insurance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회원 DB를 통한 영업으로 초창기 고객 및 멤버 확보 용이</li> <li>중국 High-end 마켓 Positioning</li> <li>보험상품 + 건강검진 및 관리 개념 일체화 서비스 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li> <li>풍부한 VIP네트워크 및 자금력</li> <li>신뢰 있는 금융기업</li> <li>향후 지역별 거점 병원 설립 용이</li> </ul>



## 기존 진출 사업 개요

북경을 시작으로 1만m<sup>2</sup> 규모의 멤버십 VIP Healthcare 센터를 구축 예정

### > Project개요

- 지역: 중국 북경
- 투자방식: 기술투자방식
- 현지파트너: AB보험그룹
- 현 진행 단계
  - 기초 F/S완료 및 NDA체결 진행 중
- 투자 모델
  - 중방 측 자본 투자 등 담당
  - 차병원그룹 기술 투자 등 담당

### <투자모델>



- Contents
- Technology
- Faculty Transfer
- Staff Training
- Management



- Capital
- Lands
- Equipments
- Equity
- Marketing



##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 달성도

1, 2차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최종 부지 선정 단계에 있으며, 본계약을 앞두고 있음.



##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 달성도

구분	추진 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추진 계획	NDA체결 및 실사조사 진행	■	■																				
	상호간 자료 교환		■	■	■	■																	
	1차 실사 조사 완료					■	■	■	■	■	■	■	■	■	■								
	MOU 체결													■	■								
	Deal Structure 결정 및 IPO 등 장기플랜														■	■	■	■					
	상호간 지분율 결정																						
	2차 실사 조사 완료																					■	■
	부지 선정 및 최종 협의 진행																						■
컨설팅 용역 계획	중국 검진시장 현황조사 및 VIP멤버십 제안(엠플러스)					■	■	■	■	■	■	■	■	■	■	■	■	■	■	■	■	■	■
	중국 시장진출 관련 협상 및 JV설립 관련 자문(Nemo)			■	■	■	■	■	■	■	■	■	■	■	■	■	■	■	■	■	■	■	■
	중국 시장진출 관련 법률 자문(K&W)			■	■	■	■	■	■	■	■	■	■	■	■	■	■	■	■	■	■	■	■
	차움 매뉴얼 (영, 중문) 구축 및 제작(에플트랜스)																						
	중국 진출 센터 S/W 구축 관련 자문(차케어)																						
출장	1차: NDA체결 및 중방 측 VIP보험 상품 설명회 참석		■																				
	2차: 북경 검진센터 방문 및 미팅진행				■																		
	3차: 무형자산가치 인정 및 지분율 협상 미팅											■											
	4차: MOU체결																						
	5차: 후보지조사 및 관계자 미팅																						■



## 사업추진 내용 및 목표 달성도

구분	추진 내용	결과 / 비고
1. 프로젝트 Kick-off	1) NDA 체결	2013년 8월 20일 체결
	2) 공식 방문 및 심회 협의	2013년 8월 28-29일 1차 북경 출장, 사업 추진 계획 및 협력방안 관련 협의
	3) 정보 교환	업무 분장 및 스케줄 표 공유 (1차 북경 출장 시) 정보 자료 공유 (2013년 9월 17일)
2. 1차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	1) 시장 현황 분석 및 센터 컨셉 구성	2013년 9월 2차 북경 출장
	2) 1차 타당성 분석	1차 Feasibility 분석 완성(2013년 10월 초) 투자금 산정, 운영 및 인력분석, 경제성 분석
	3) 가치 평가(Valuation)	일정부분 무형가치로 인정 (A사), 2013년 10월 3차 북경 출장
3. MOU 및 본 계약	1) 상호간 지분율 결정	TBD
	2) 주요 조건 협상	TBD
	3) MOU 체결	2013년 11월 22일 체결 (2013년 11월 4차 북경 출장)
4. 2차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	1) CHA측의 수정모델 송부	
	2) A측의 변경 제안서	2차 Feasibility 분석 완성(2014년 1월 중순)
	3) 상호간의 이견 조율	진행 중
5. 최종 협의 및 본계약	1) 후보지 선정	상해 출장 2회(총 6곳 site 시찰) 북경 출장 2회(총 2곳 site 시찰) 최종적으로 1곳 site 선정
	2) 최종 모델링	3차 최종 Feasibility Report 완성(2014년 3월 초 예상)
	3) 본계약 체결	2014년 3월 이후
6. 시장조사	1) 중국 검진 시장 현황, VIP 멤버십 제안	컨설팅 보고서 입수 (2014년 1월)
	2) 중국 검진시장 및 의료 환경 현황	컨설팅 보고서 입수 (2013년 12월)
7. 설립 및 운영	1) 중국 의료 법인 설립 및 합자 법인 관련 법적 검토	컨설팅 보고서 입수 (2013년 12월)
	2) 의료진 채용 및 의사 송출 관련 법적 검토	컨설팅 보고서 입수 (2014년 2월)
	3) CHAUM 매뉴얼 제작	영문/중문 번역
	4) 센터 운영S/W 구축	컨설팅 보고서 입수 (201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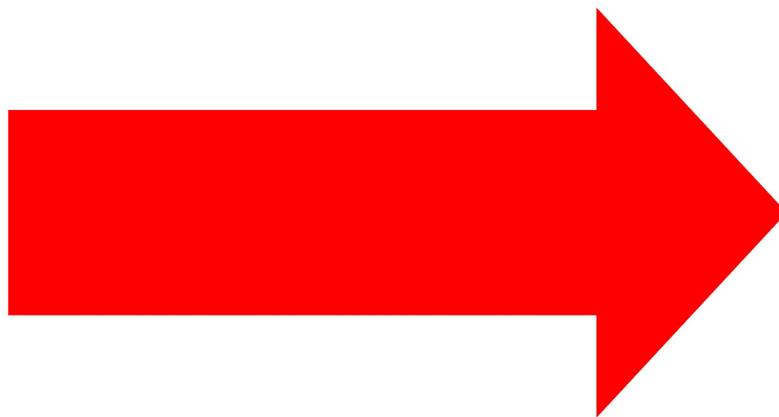
## 추후 사업 진행 계획

Schedule		Jul 2014	Aug 2014	Sep 2014	Dec 2014	Jan 2015	Feb 2015	Mar 2015	Apr 2015	May 2015
Contract	Complete F/S	■								
	Conclusion of The Investment(or JV) Agreement	■	■							
	JV Establishment			■						
Interior & Tenant Improvement	Programming			■						
	Architectural Planning & Interior Design				■	■	■	■	■	■
	Construction					■	■	■	■	■
Equipments	Listing Equipments			■						
	Order Equipments				■					
	Installing						■	■	■	■
	Simulation									■
Dispatching & Operation Preparation	Doctors									■
	Key Managements								■	■
	Other Staff								■	■



## Summary

1. 내가 원하는 것/방향을 명확히 설정  
- 이익? 장기적인 시장 정착? EV극대화?



## Summary

---

### 2. 파트너 선정

- Local파트너와의 R&R. 기업문화. 최고경영자의 Chemistry



## Summary

---

### 3. 철저한 시장조사 & 협상

- 법규, 제도, 마케팅 trend, 지분율, 대우, 조건 등



## Summary

---

### 4. 현지전문가 양성 & 고용 & 운영



# 감사합니다

A "Global Hospital Operation" providing a full spectrum of specialty treatments

## Note

■ 발표 9 ■

2013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례발표

강남세브란스병원



## 병원수출 심화 F/S 사업

2014-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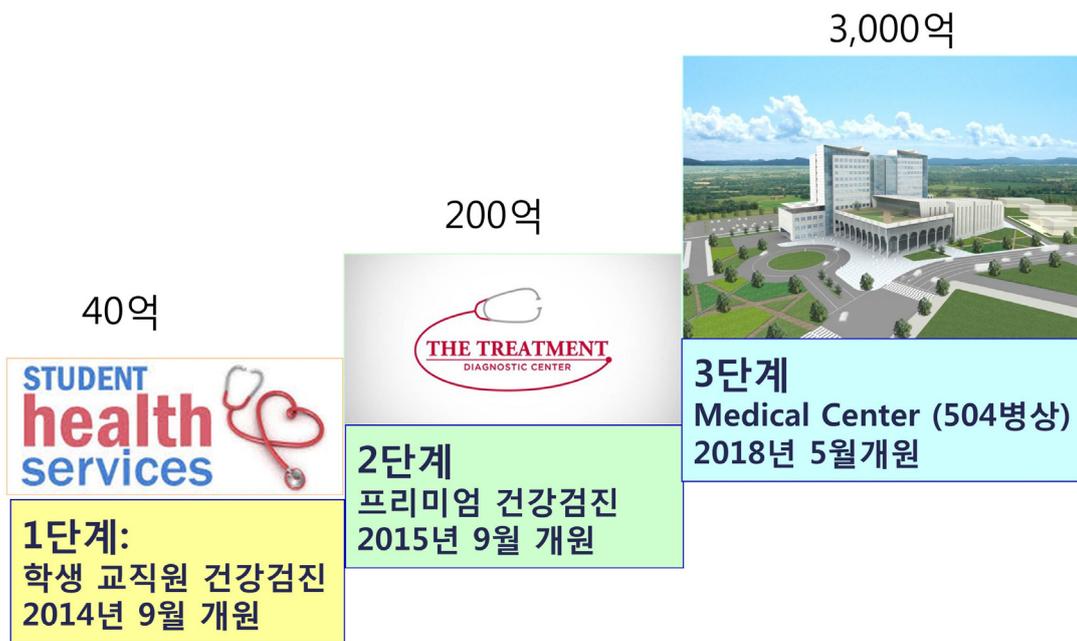
김명훈, PhD, MSW



강남세브란스병원

### 프로젝트 개요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 Partner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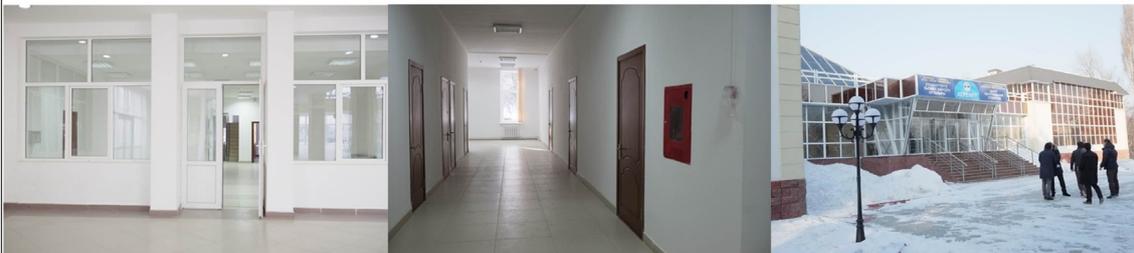
- 설립: 1934년 1월 15일 생물학과 개설로 개교
- 학생: 20,000명
- 교직원: Faculty member 2,500명
- 캠퍼스 위치: 알마티시
- 캠퍼스 면적: 165,000m<sup>2</sup> (약 5만평)
- 랭킹: 카자흐스탄 국내 1~2위  
Worldwide University Ranking(Topuniversities) 299위  
(서울대 35/연세대 114/ 고려대 145/경희대 255/ 중앙대 500위 이하)



## 프로젝트 내용

1단계사업  
학생 교직원 건강검진센터

- 예산규모: 약40억원
- 건진센터 규모: 연면적 약600평
- 건립목적
  - ◆ 1차 목적- 학생과 교직원 건강검진 수요 소화
  - ◆ 2차 목적- 프리미엄 검진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 운영주체: SPC(특수목적법인)
- 개원예정시기: 2014년 9월 중순
-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역할
  - ◆ 건립지원
  - ◆ 운영지원
  - ◆ 현지인력 교육 및 훈련



## 사업추진 경과



활동이력	시기	참여인사	활동내용
대통령 중양아시아 순방 비즈니스 포럼에서 MOU	2014-06	총장+병원장	Bio-Medical Cluster 건립 MOU
KazNU→ 연세대+연세의료원+GNS	2014-02	총장	의대신설 Medical Center 건립지원
동카작→ GNS	2014-01	주지사	병원건립지원+인력파견 요청
KazNU→ GNS	2014-01	총장자문	협력조건 협의
GNS→ KazNU+NHMCSC+AKK	2013-12	의료진+실무진	기술적 지원/NW
삼정KPMG→ KazNU	2013-12	컨설턴트(2명)	사업타당성분석
GNS→ KazNU	2013-11	실무진	기술적 지원
KazNU→ GNS	2013-10	부총장+실무진	운영+IT
GNS→ KazNU+NMH+동카작	2013-09	부원장	진척도확인/NW MOU
병원수출 심화 F/S 프로젝트	2013-07		
KazNU→ GNS	2013-07	부총장	협력조건 협의
GNS→ KazNU+AKK+동카작	2013-06	실무조사단	기본FS/NW MOU
KazNU→ GNS	2013-03	부총장	사업착수 요청
GNS→ KazNU	2012-12	병원장	검진센터 MOU

## 사업타당성 분석 **삼정 KPMG** 현지조사 결과

- 의료환경분석의 주요 시사점
  - ◆ 수요적 측면
    - ❖ 암·심혈관계 질환의 비중이 높음
    - ❖ 공공의료서비스 대상지역의 확대 가능(거주지→지역제한 철폐)
    - ❖ 의료 수가 인상 및 공공의료보험체계 도입 가능성
    - ❖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 증대
  - ◆ 공급적 측면
    - ❖ 질병 예방정책의 강화로 인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증대 가능성
    - ❖ 전문화된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자 증가
    - ❖ 현지 의료인의 낮은 의료역량과 의료분야 전문인력 부족
- 재무타당성 검토 결과 (시나리오 별)
  - ◆ Normal case: NPV 702백만원/IRR 26.6% (사업타당성 인정)
  - ◆ Best case: NPV 14,201백만원/IRR 43.3% (사업타당성 인정)
  - ◆ Worst case: (사업타당성 없음)

## 사업타당성 분석 상세설명

구분(백만원)		Best	Normal	Worst	비고
1단계 사업 학생/교직원클리닉	NPV	2,804	702	(1,399)	WACC (11.14%)
	IRR	24.6%	14.8%	2.7%	
2단계 사업 프리미엄건강검진	NPV	11,406	5,052	(1,303)	
	IRR	77.2%	43.1%	0.1%	
합계	NPV	14,210	5,754	(2,702)	
	IRR	44.3%	26.6%	1.5%	

## 사업타당성 분석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 ◆ 재무적 위험성 제거
    - ❖ Worst 시나리오 발생시 KazNU측에서 재정적 책임 담보
  - ◆ 사업 partner 상호간 신뢰 확보
    - ❖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GNS측 핵심 의사결정자 참여 필수적)
    - ❖ 갈등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구축(중립적 인사로 구성)
-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
  - ◆ 1단계사업: 학생/교직원클리닉 수요확보 (정부승인/ 법적 지위 확보)
  - ◆ 2단계사업:
    - ❖ 한국의 우수 검진센터 수준의 물리적 여건 조성
    - ❖ 우수한 의료인 및 지원인력 확보(한국에서 인력파견/현지인 교육)
- 운영역량 확보
  - ◆ 우수한 의료역량 (의료인력 파견/ 현지인력 교육훈련)
  - ◆ 운영지원
    - ❖ 경영자문 (행정/기획/원무분야 등)
    - ❖ 팀장급 이상의 경험있는 행정인력 파견

##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

사업관계설정  
협약

- KazNU측에서 GNS에 요청하는 내용
  - ◆ SPC 참여
  - ◆ “세브란스” 브랜드사용
  - ◆ 자본투자(의료기기 지원+ 투자유치 협조)
  - ◆ 위탁운영/의료인 및 운영인력 지원
  - ◆ Bio-Medical Cluster 건립 (500병상규모 Medical Center포함) 컨설팅
- GNS측의 입장
  - ◆ 프리미엄검진 이후 프로젝트 부터 SPC참여 및 브랜드사용 가능
  - ◆ 1단계 사업(학교검진)에 브랜드사용 어려움
  - ◆ 자문료 지불
  - ◆ 운영인력 단기지원 가능/수수료 수준에 따라 위탁운영여부 검토
- 자문료
  - ◆ 1단계 사업에서는 자문료 지불하지 않음(단기파견지원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
  - ◆ 2단계~Medical Center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함

## 향후 추진일정

### (검진센터)

- 장비도입/설치 완료: 7월말
- 핵심 의료인 연수교육: 7월16일~31일
- 현지 인력 교육: 8월중
- 검강검진프로그램 시뮬레이션: 8월중
- 개원: 9월중

### (프리미엄검진)

- 프리미엄 건강검진프로그램 장비검토: 7~10월
- 프리미엄 검진 기반시설 설비: 2014년 10월~ 2015년3월
- 프리미엄 건강검진프로그램 장비도입: 2015년 8월
- 프리미엄 검진 개원: 2015년 9월

### (메디컬센터)

- 정부 승인 및 컨소시엄 구성: 2014년12월
- 정부 지급보증/자금확보: 2015년 12월
- 건축/ 교육: 2016년~2017년
- 개원: 2018년 5월

## 주요활동



Al-Farabi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 검진센터 건립 및 운영준비 지원
  - ◆ Layout 설계
  - ◆ 의료기기 품목
  - ◆ 인력구성
  - ◆ 건강검진프로그램 구성
  - ◆ 사업타당성 검토
- Medical Center 건립 지원 검토
  - ◆ 자금계획
- 의과대학 설치계획 지원
- 대학간 협력(연세대-KazNU)



## 주요활동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Холдинг

NMH  
NMHCSC  
NRCMC

- NHM
  - ◆ 의료인 교육훈련
  - ◆ 학술교류
- NMHCSC
  - ◆ 의료인 교육훈련
  - ◆ 의료지원 및 행정인력 교육훈련
  - ◆ 병원경영시스템 교육
  - ◆ 국제마케팅 전략
- NRCMC
  - ◆ 마스터클래스 운영
  - ◆ 의료전문인 멘토십



NMH K.Alibek원장 MOU 서명



NMHCSC 심장이식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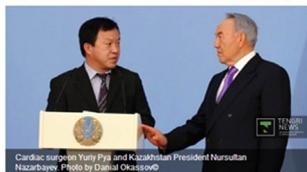


NMHCSC 수술실 참관



심장수술의 최신지견 강의

Hot news: Thatcher's hairdo was high-maintenance  
All kinds of heart surgeries are available in Kaz!



Chairman of the National Scientific Cardiac-Surgery Center Yuri Pya assured President Nursultan Nazarbayev that Kazakhstan people no longer had to go abroad to get heart surgeries. According to him, all kinds of heart surgeries are available in Kazakhstan. [zenonline.kz](http://zenonline.kz) reports.



NMHCSC 교육 프로그램 논의



NRCMC 의료인 교육훈련

## 주요활동



AKK  
Association of Korean in KZ

- 한-카작 의료협력센터 운영
  - ◆ 환자송출
  - ◆ 분야별 의학교류
  - ◆ 의료인 심화교육훈련
  - ◆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차세대 의료인 육성지원



고려인협회 의사 간담회



Cardiac Institute, Almaty



고려인협회와 MOU

## 주요활동



East Kazakhstan Akim

### MOU 내용

- 주립병원 건립지원
  - ◆ 병원규모: 300병상
  - ◆ 대지: 20,000평
- 재활병원 건립지원
- 심장병원 건립지원
- 나눔의료



Горячие новости: Пересечение границу с Туркменистаном казах  
Врач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жертвовали деньги  
жизн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мальчика  
четверг, 05.05.2013, 04:23  
□ Комментарии (30)



Врач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числили по одному проценту о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ди спасения жизн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мальчика, сообщает корреспондент "31 канал".  
Собранные деньги были потрачены на операцию на сердце Никиты Коломысова из Зыряновска. "Когда мы отправили все документы на оформление визы, даже была такая мысль, что сейчас позволим и скажет, что это апрельская шутка. Люди всякие"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감사합니다

**Note**

## Note